

##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주요 쟁점

양경승  
제주지방법원판사

### I. 서 언

우리 나라에 이른바 반론권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80년의 언론기본법(1980. 12. 31. 법률 제 3349호)에 의해서이다. 종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사법적 구제 수단으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의한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만이 가능하였었다. 그런데,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인하여 그 관련자가 피해를 입는 것은 그 보도가 진실이 아니거나 혹은 편파적인 것이거나 내용을 쫓곡하는 등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전파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므로, 그 신속한 피해 구제 및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반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인상이나 평가를 가져다 준 잘못된 보도내용을 취소, 정정 등의 방법으로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종래의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의해서도 이와 같은 정정보도 등이 불가능하였던 것은 아니며, 우리 민법 제 764조도 이러한 구제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런데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통한 정정보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잘못된 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 및 위법성을 입증하여야만 하는데, 사실상 언론사가 특정인의 명예나 신용 등을 해칠 고의를 가지고 보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있을 수 없고, 또한 촌각을 다투는 언론보도의 특성상 과실을 인정하기도 쉽지 않으며, 우리 법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보도를 하였거나, 진실하지는 못하더라도 언론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면책을 인정하므로(형법 제 310조, 대법원 1988. 10. 11. 자 85 다카 29 판결, 1993. 6. 22. 자 92 도 3160 판결, 1996. 5. 28. 자 94 다 33828 판결, 1996. 10. 11. 자 95 다 36329 판결, 서울민사지법 1984. 4. 11. 자 82 가합 4734 판결 등 참조), 언론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묻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

또한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는 다른 소송사건의 폭주와 증거조사 등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많은 시간적 제약 때문에 신속한 정정보도를 꾀하기도 어렵고, 그 절차의 번잡과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일반 국민들이 이 제도를 통하여 피해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1)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참작하여 언론기본법은 언론사에 대하여 국가에 대한 정보청구권 및 취재원의 비밀보호 등 언론의 자유를 보호, 신장하는 한편으로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독일, 프랑스 등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던 반론권제도를 도입하였다. 반론권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한 정정보도청구권과는 달리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나 위법성여부를 묻지 않고, 또한 보도내용이 진실한지 여부도 따지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매우 쉬운 반면에, 원래의 보도내용을 취소,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론 내지 반박을 허용하는데 그침으로써 언론사에게도 큰 부담을 지우지 않으므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나 제약 없이 신속 간편한 피해 구제 및 언론 본연의 활동을 가능케 해 주는 이점이 있다. 동시에 언론기본법은 피해자의 접근을 쉽게하기 위하여 소송에 이르기 전의 전치절차로서 언론중재위원회를 두어 먼저 여기에서 피해자와 언론사 간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2) 부득이 소송에 이른 때에도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심리하되 재판의 확정 전에도 집행이 가능한 가처분절차에 의해 재판하도록 함으로써 권리 구제의 신속을 도모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981. 1. 29. 그 시행령(대통령령 제 10190 호)이 공포된 데에 이어 조정기관 겸 소송의 전치기구로서 언론중재위원회가 1981. 3. 31. 발족하여 현재까지 법원과 함께 이 제도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는바, 6. 29 선언 이후 일부 독소조항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던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이에 대신하여 1987. 11. 28. 정기 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법률 제 3979 호. 이하 편의상 정간법으로 부르기로 한다)과 방송법(법률 제 3978 호)이 각각 제정 공포되고, 그에 뒤이어 1991. 12. 31. 종합유선방송법(법률 제 4494 호)이 제정되어 그간 수차의 개정을 거치면서도 반론권제도는 의연히 존속하면서 오히려 많은 보완과 그 기능의 보강을 보게 되었다. 이는 반론권제도가 그 순기능과 필요성을 인정받아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림으로써 튼튼한 기반을 구축한 실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초기에는 생소한 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언론계의 반발 등으로 인하여 적지않은 시행착오와 오류도 없지 않았으나, 그동안 15년 여의 세월이 흐르면서 언론중재신청이나 법원의 반론보도청구소송을 통하여 많은 사례의 집적과 함께 이론적 정립도 보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1995. 12. 30. 개정되어 1996. 7. 1. 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간법(법률 5145 호)3)은 그 용어를 실체에 맞게 「정정보도청구권」에서 「반론보도청구권」으로 고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외에, 반론보도후 상소심에서 반론보도를 명한 하급심의 재판이 취소될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에게 반론보도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언론사의 이해를 조절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 동안의 법원 판례를 토대로 반론권(반론보도청구권)4)의 의의와 본질,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법원이 이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가지 간제와 쟁점을 검토하여 앞으로의 발전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II. 반론권의 의의와 성질

### 1. 반론권의 의의

#### 가. 알 권리로서의 반론권

반론권은, 자기에 관한 어떤 정보가 언론에 의하여 공표, 보도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경우에 당해 언론기관에 대하여 그 보도내용에 대한 자기의 반론 내지는 반박을 무료로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된다. 이는 정보공급자인 언론기관(매스컴)이 정보를 취재, 편집, 보도, 전파할 권리 즉, 이른바 「알릴 권리」로서 향유하는 언론의 자유에 대응하여, 정보수익자로서의 개개의 국민이 국가나 언론기관 등 정보 소지자에 접근(Access)하여 그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정보청구권), 잘못된 정보에 대하여 수정, 반론을 가하며(응답권), 정보원으로부터 차단받지 않고 자유로이 정보를 전달받을 자유(정보원으로부터의 자유)와 권리 즉, 「알 권리」로서의 언론의 자유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5) 근대 시민국가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임을 직시하고, 이전 시대에 언론에 가해졌던 전제적 통제와 간섭을 제거하여 언론의 자유를 절대적 자유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하게 보장하였기 때문에, 이후 언론의 자유는 아무런 간섭이나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절대적 권리로 성장하여 자유민주적 시민국가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하였던 것이 사실이나, 자본주의체제 아래서 민간에 개방된 언론은 점차 영리기업에 의해 대형화, 절대권력화 하면서 상업주의와 결탁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즉, 19세기 후반에 들어서 독점자본주의의 성숙과 그에 따른 폐해는 영리기업으로서의 언론에도 영향을 미쳐 이윤 추구를 제일로 내세워 온갖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판매부수와 광고매출 증대에만 혈안이 된 황색언론이 등장, 대중의 저속한 인기와 호기심에 영합하거나 이에 편승하여, 조작된 흥론을 공론인 것처럼 가장, 분식해 보도하거나 편파·왜곡보도를 일삼고, 대상을 가리지 않은 채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무제한적인 추적 폭로를 통하여 회복 불가능한 엄청난 손해를 가하는가 하면 청소년의 건강한 정서적 성장 및 선량한 사회 풍속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이리하여 자연스레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시민적 동의의 기초에 대한 재검토와 반성이 대두되고, 언론이 지닌 공적 의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토대로 언론의 이같은 역기능에 대하여 다양한 규제 수단 및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구제 수단이 강구되기에 이르렀는 바, 반론권 역시 그러한 산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반론권은 이와 같이 그 동안 언론의 자유 영역에서 사실상 배제된 채 수동적 입장에만 놓여 있었던 일반 국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매스컴의 일방적 편향적 언론활동 및 그로부터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반론, 반박을 통하여 다양하고도 활발한 정보의 교류 및 전파를 가능케 함으로써 자유로운 정보시장의 여과기능을 통해 진실하지 못하거나 해로운 정보를 사회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제,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고, 언론보도의 객관적 신뢰성을 향상시켜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자체 언론의 자유 내지는 알 권리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 나. 반론권의 인정 근거

반론권의 행사는 크든 작든 언론에 대한 규제와 제약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정당화할 이론적·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할 것임은 물론이다.

### (1) 이론적 근거

반론권의 이론적 근거에 관하여는, 언론의 자유 역시 많은 자유와 권리 중의 하나로서 이와 대립되는 다른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으며, 그것이 자유와 권리로서 시인되고 보장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합치되는 한도 내에서만이고, 그 한계를 벗어나서까지 무제한적으로 보장될 수는 없다는 '자유와 권리의 내재적 한계이론'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주요한 논거가 된다.6)

"자기의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권리가 시작되는 곳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은 이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언론의 자유와 권리는 이른바 매스컴만의 독점적인 자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향유하는 자유와 권리로서, 매스컴이 특정인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였을 경우 그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 내에서 적절한 수정, 반론의 제기 등을 통해 대응할 권리 역시 또 다른 언론의 자유와 권리로서 인정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보의 일방적, 편향적 전파는 궁극적으로 그 자유로운 전파 및 올바른 정보의 전파를 꾀하는 언론의 자유와 그 본래적 사명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이러한 견지에서,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존립을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언론의 보도가 개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 여론 형성에 미치는 언론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개인이 입는 피해는 참으로 큰 것이므로, 이른바 무기대등의 원칙에서 피해자인 개인에게도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 수단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 정간법은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에게 일정한 요건하에 정정보도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라고 판시한(대법원 1986. 1. 28. 자 90 다카 25468 판결) 반면, 피해자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지엽말단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반론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6. 12. 23. 자 86 다카 818 판결).

또한 헌법재판소 1991, 9. 16. 자 89 헌마 165 결정은, "언론기관에 의하여 일반적인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은 자에게는 침해된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하고도 적절한 방어 수단이 주어져야 함이 형평의 원리에 부합하며, 따라서 정간법 등이 정한 반론권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바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그 바탕을 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보도된 사실적 내용에 대하여 반박의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공정한 여론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보장의 객관성을 향상시켜 제도로서의 언론보장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위에서 든 헌법의 각 조항들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하여 같은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7)

## (2) 실정법적 근거

반론권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로는, 헌법 제 10 조의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제 17 조의 사생활의 자유, 제 32 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제 21 조의 언론의 자유와 책임 및 그 하위법령에서 구할 수 있다 현행 헌법 제 21 조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그

같은 침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8), 그 피해의 배상에는 금전적 배상은 물론 원상회복을 위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속에는 인격권 및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을 토대로 그 하위 법률인 정간법과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은 반론보도청구권의 내용과 그 행사 요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민법도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금전배상과 함께 원상회복조치로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인정하고 있는 바, 위의 처분에는 정정보도청구는 물론 반론보도청구도 허용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 다. 반론권의 한계

위의 해당되는 곳에서 살펴보겠지만, 반론권은 언론사의 보도에 대한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무료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반박문을 게재·방송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될 수밖에 없으며, 오늘날 대다수의 언론이 영리기업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점에서 보면 그 영업활동에 대하여도 심대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련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일방, 편면적인 정보의 흐름을 수정하여 보다 진실되고 공익에 합치되는 정보의 흐름을 꾀하는 반론권제도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그것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 내지는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일정한 한계를 지워야 할 것이다. 그러한 한계 설정의 장치로서는, ① 사실보도에 한하여 반론을 인정하는 방법, ② 보도내용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관련되고 그로 인하여 명예나 신용 등 일정한 권리나 법익의 침해를 입은 자에 한하여 인정하는 방법, ③ 반박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거나 굳이 반박을 허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 ④ 원래의 보도와 반박보도간에 기사의 위치, 지면의 크기, 보도 횟수 등에 있어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 ⑤ 그 행사기간을 비교적 단기간으로 하여 언론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 ⑥ 재판의 가집행성과 관련하여 상소심에서 하급심의 재판이 취소될 경우 청구자로 하여금 반박보도에 소요된 비용이나 적절한 손해의 배상 등을 부담케 하는 방법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언론기본법이나 정간법 등은 위의 ① 내지 ⑤항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고, 1995. 12. 30. 의 개정 정간법과 방송법 등은 ⑥항도 새로이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헌법재판소 1991. 9. 16. 자 89헌마165 결정 역시,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대 헌법의 한 특징이나, 다른 한편 모든 권리의 출발점인 동시에 그 구심점을 이루는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이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따르지 아니할 수 없는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정간법상의 반론권은 비록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되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전체적으로는 개인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라는 상충되는 기본권 사이에 제한의 목적이나 적정성 등에 있어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 2. 반론권의 성질

### 가. 정간법 및 방송법 등의 규정

1995. 12. 30.에 개정된 현행 정간법 9) 제 16 조는 「반론보도청구권」이란 제목 아래 "정기 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피해자)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언론사)에게 서면으로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제 1 항 본문), "언론사가 반론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제 3 항), "반론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제 4 항), "반론보도의 내용은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제 5 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간법 제 19 조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서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제 1 항), 법원의 재판은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고,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언론사에게 반론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 4 항), 그 제 20 조는 추후보도청구권으로서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사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제 1 항),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제 3 항)고 규정하여 반론보도청구권의 한 유형으로서의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5, 12. 30. 제정된 방송법 제 41 조 및 종합유선방송법 제 45 조도 위의 정간법과 비슷한 규정을 두고, 반론보도청구권 및 추후보도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한 사항은 정간법상의 관련 규정을 모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방송법 제 42 조, 종합유선방송법 제 45 조 제 10 항). 법원의 반론보도청구소송과 관련하여서는 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1996. 6. 27. 대법원규칙 제 1432 호 10)이 정간법 등에 대한 보충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 정간법 및 방송법 등에서 인정되는 반론보도청구권은 1980 년의 언론기본법상의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다. 언론기본법은 제 6 장의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 중 제 49 조 이하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하였는 바, 11) 그 용어만 다를 뿐 그 내용은 현재의 정간법 등 관련 규정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언론기본법상의 반론권제도는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 Burtemberg) 주 언론법상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본래 반론권제도의 역사적 고향은 프랑스이다.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을 전후하여 검관제가 폐지되고 고장된 언론·출판의 자유 속에 정치적 신조와 사상이 다른 반대파에 대하여 신문을 이용한 공격과 비판이 극심하였던 사정으로 신문을 갖지 않은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으나, 종래의 민 형사상의 일반 구제절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1822 년의 출판법은 언론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반론이 있을 때는 3 일 내에 무료로 이를 보도하도록

하였다.12) 현재 프랑스에서는 위 출판법을 이어받아 사실적 주장에 의한 명예훼손적 보도에 대해서는 물론 의견이나 논평 등 가치판단적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권의 행사가 인정되고 있고, 1972년의 방송법에 의해 방송에 대하여도 인정되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제도를 이어받은 독일 역시 1874년 제국 언론법을 통하여 이를 인정하였으며, 근래에는 각 주의 언론관계법에 의해서 규율하고 있는데 주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13) 반면에 영미에서는 전통적인 Common Law 상의 불법행위책임의 전통이 강한데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거의 절대적인 보호로 반론권은 인정되지 않고 14) 손해배상책임에 의해 해결되고 있으며, 다만 방송에 대하여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 나. 정정권인가 반박권인가?

넓은 의미의 반론권은 정정권(Right of Correction)과 반박권(Right of Reply)으로 나눌 수 있다. 정정권은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그 취소, 시정의 보도를 구하는 것인 반면에, 반론권은 보도내용의 진실여부에 관계 없이 이에 대하여 수정, 변경, 첨가, 삭제 등 여러가지 형태의 반론 내지 반박문의 보도를 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정정보도의 주체는 당해 언론사가 되지만 반박보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그 주체가 되어 반박적 주장을 하게 되는 차이가 있다. 반론권에 관한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초지의 정정권과는 달리 현재는 반박권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그 이유는 원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조사하여 정정을 할 경우 ① 언론기관에 막대한 입증부담을 주어 결과적으로 언론 본래의 활동을 위축시키게 되고, ② 수사기관과 같은 강제적 조사권한이 언론기관에 주어져 있지 않은 이상 진실여부의 명확한 조사가 어려우며, ③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조사하게 되면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피해 구제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정권의 경우 원 보도내용이 허위일 것을 전제로 그에 대한 정정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그 논리적 귀결로서 정정을 구하는 내용 역시 진실일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원 보도내용의 비진실성과 정정을 구하는 내용의 진실성을 조사하게 되면 더욱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렵게 될 것이다. 현행 우리의 정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론보도청구권은 반박권을 택하고 있는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그 주의 언론법을 모델로 한 것으로서, 종래의 언론기본법상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반박권이라는 것이 현재의 통설 및 판례의 태도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정정권이라하여 반드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15)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민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의 고의, 과실 및 위법성 등 불법행위책임을 전제로 하므로 피해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반론 내지 반박보다는 더 강한 구제 수단인 정정보도를 구함이 보통이겠지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나 법원은 민법 제 754 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정정이 아닌 반론이나 반박문의 게재 등을 요구하거나 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민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이 아닌 반론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반론권은 불법행위책임보다 그 행사 요건이 덜 엄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론이나 반박이 아닌 정정보도를 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16) 가능하다면 진실한

정보의 유통을 위해서는 반론, 반박에 그치는 것보다 원 보도내용의 진위를 가려 그 허위성이 드러날 경우 오히려 정정보도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도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정정보도를 하게 되면 절차의 지연으로 시의적절한 피해 회복이 어렵고 언론사에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입법정책적으로 정정권으로부터 반박권으로 전화되어 온 것임은 앞서 지적한대로다. 이와 같이 반론권제도하에서는 진실한 정보와 진실하지 못한 정보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어 일터 정의롭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실한 정보와 진실하지 못한 정보를 엄격히 구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간의 인류역사에 비추어 보아 당장은 그 사회의 가치관등에 비추어 진실하지 못한 정보라도 장래에는 진실한 정보가 되는 것과 같이 진실하지 못한 정보가 반드시 무익하다고만 할 수 없으므로, 진실하지 못한 정보를 허용한다고 하여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

이른바 '정보의 자유시장'에서 진실한 정보가 그 자체의 여과, 자정작용을 통하여 진실하지 못한 정보를 구축, 배제함으로써 스스로 정의를 구현하게 되는 것은, 언론의 가장 좋은 친구라는 토마스 제퍼슨의 다음과 같은 말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진리는 위대하고, 그 자체에 맡겨 두면 널리 퍼지게 될 것이다. 진리는 오류에 대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적수이며, 인간의 간섭이 진리의 자연적 무기인 자유로운 토론을 무장해제하지만 않는다면 그 갈등에서 두려워 할 아무 것도 없고, 진리와 오류가 서로 자유로이 반박하도록 허용될 때 오류는 더 이상 위험한 것이 못된다" 언론기본법 및 개정 전의 정간법 제 16 조와 제 19 조는 현재와 대동소이 한 내용을 규정하면서도 그 제목을 「정정보도청구권」이라 하고, 그 본문에서 현재의 「반론보도청구권」,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이란 용어 대신에 「정정보도청구권」, 「정정보도」, 「정정보도문」이라고 하였으며, 또 피해자가 보도를 요하는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를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광의의 반론권 중 정정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또는 더 나아가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과 동일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연혁적으로 이 제도는 이미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반박권제도를 채택한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그 주 언론법을 모델로 하였고, 언론기본법은 그 행사기간도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달리 14일 내지 1월의 단기간으로 하였으며, 언론사에게 반론보도문을 무료로 게재·방송하도록 하는 한편,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원 보도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고 반론·반박에 필요한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하였을 뿐 아니라, 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때에만 이를 제한함으로써 정정권이나 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과의 차이를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대법원 1986. 1. 28.자 85 다카 1973 판결은, "언론기본법 제 49 조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제목의 표현과는 달리 언론사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이의대상이 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는 그 권리 행사의 요건이 아니다(이런 점에서 위 권리의 제목이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며 반박보도청구권이라고 표현하였어야 옳을 것이다). 위 규정의 의의는 피해자에게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장황하고 번잡한 사실조사에 시간을 낭비케 함이 없이 신속하고 대등하게 반박문 공표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여지거니와, 언론사측으로서도 보도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마다 일일이 그 진실여부를 소상하게 가려내어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면 언론의 신속성과 신뢰성은 저절로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를 이의가 제기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가려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한 요건하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함은 언론의 신속성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라고 판시하여 그 법적 성질이 정정권이 아닌 반박권임을 명백히 선언하였다.

또 대법원 1991. 1. 15. 자 90 다카 25468 판결도, "진실에 부합되는 원문 보도에 대하여도 정정보도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원문 보도에 대한 반박문인 정정보도의 내용도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나, 다만 그것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이를 재확인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도 1991. 9. 16.자 89 헌마 165 결정에서, "정간법 제 16 조 및 방송법 제 41 조에 규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은... 피해자의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을 게재 또는 방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위 법률 조항은 비록 그 표제 및 법문가운데 '정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을 보면 명칭과는 달리 독일의 예에 따라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에 의한 피해자가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의 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이른바 반론권을 입법화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정정보도청구는 그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따지거나 허위 보도의 정정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구 언론기본법이나 개정 전의 정간법 및 방송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명칭이나 표현과는 달리 반론권, 더 엄밀히는 반박권임을 확인하면서 그 논거로서 위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견해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서 소수의견(헌법재판관 2인)은, 위 각 법률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이 입법연혁상 독일의 반론권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 판례에서도 반론권인 것으로 판시되고 있다 하더라도, ① 그 명칭을 독일과는 달리 정정보도청구권이라 하면서 반론권내지 반박권이라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② 독일 법에서는 문제된 기사와 동일한 간행물 부분에 동일한 문자로서 인쇄되어야 한다고 하여 반론보도가 기히 보도된 내용과 대조되는 관계 당사자의 반대 입장을 보도임을 뚜렷이 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이 정정보도문의 게재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기왕의 보도내용은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고쳐 바로 잡아 보도할 것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③ 독일 법의 「관련자(Betroffence)」라는 용어대신 정정보도청구권자를 「피해자」라고 하여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절차인 것으로 해석되기에 적합하게 규정함으로써, 보도내용의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관련자 자신의 반론게재청구절차임을 분명히 한 독일 법과는 거리가 있으며, 문리상으로는 논리상으로 오히려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따져 이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인 것으로 보아 무방하게 되어 있음에도, 그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가리기 위한 대석적 변론을 필요적으로 열게 함이 없이 당사자 쌍방을 심문하거나 소명만으로 족하게 하는 등의 간이한 소송절차에 의하도록 하는 일방, 곧바로 가집행케 하고 상소 제기 등에 따른 강제집행의 정지를 불가능케 하여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그 본질이 관련 당사자의 반박문게재청구임이 뚜렷해지도록 법의 표현부터 재정비하고, 언론기관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회복처분이 정정보도청구인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배제되도록 관련법을 고치고 다듬어 위헌소지를 청산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을 촉구한다고 하여 다수 의견에 대한 반대의 견해를 제시하였는바, 그 결론의 옳고 그름을 떠나 좋은 지적이라고 하겠다. 1995. 12. 30. 의 개정 정간법 등은 이와 같은 지적에 따라 종래 언론기본법이나 개정 전 정간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보도청구권」으로 그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그것이 명실상부한 반박권임을 명확히 하였는바, 독일에서도 종래 예는 정정권으로 구성하였으나 근래에는 거의 모든 주가 반박권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 다. 민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과의 관계

언론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와 법익을 함부로 침해할 수는 없음을 당연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행위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우리 헌법 제 21 조 제 4 항도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그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주의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민법 제 750 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그 제 763 조는 손해의 배상을 금전에 의하여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손해배상의 이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여 피해가 없었던 것과 같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나, 언론보도에 의하여 명예나 신용 등 법익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성질상 금전에 의한 배상만으로는 완전한 원상회복을 꾀할 수가 없게 된다.

그리하여 민법 제 764 조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금전배상에 갈음하거나 또는 이와 아울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명예회복의 수단으로는 원래의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17) 사죄광고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종래에도 위와 같은 민법 규정에 의하여 정정보도나 사죄부고 등이 가능하였고 실제로 그 같은 조치 등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정간법 등에 의한 반론보도청구권에 관계없이 위 민법 규정에 의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임은 물론이다.

다만, 사죄광고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1991. 4. 1.자 89 헌마 160 결정에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사죄광고를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할 경우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 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을 자유로서의 헌법 제 19 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진정한 의사나 감정에 반하여 사죄의사를 표명케 함으로써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의 형성 및 인격 형성의 분열을 초래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된 인격의 존엄과 가치 및 그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권에도 위해가 되며, 정정보도나 유죄판결의 공시 등 다른 대체수단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평가를 정정시키려는 민법 제 764 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사죄광고가 필요 부득이하다거나 원상회복에 적합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민법 제 764 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자진외사에 기한 것이 아닌 한 재판으로써 이를 강제할 수는 없게 되었다.

그런데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타인의 행위에 의하여 권리가 침해되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② 그 침해행위가 법률이 금지하는 것으로서 위법하여야 하며, ③ 행위자에게 침해행위 및 손해발생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민법에 의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추구하고 그 피해 구제의 수단으로서 정정보도 등을 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증명하여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될 것임은 물론이며 이를 증명하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 또 승소하여 뒤늦게 정정보도 등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이미 사회 일반의 부정적인 평가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 쉽게 원상회복이 되기도 어렵고, 대개의 경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당초의 보도내용을 잊어 버리기 십상이어서 정정보도에 의하여 당초의 부정적인 보도내용을 쉽게 수정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게 되어 결국 아무런 소득 없는 결과로 끝나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보다 완화된 요건하에 신속하게 원래의 보도에 대응한 피해 당사자의 반박을 보도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하려고 안출된 것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반론권 내지는 반론보도청구권인 것이다. 그렇다면 언론기본법이나 정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 동일한 성질의 것인가? 위 각 법률에서는 이에 대하여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의하여 이를 추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개정 정간법 제 19 조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서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되 민법 제 764 조에 의한 권리의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고 함으로써 동법상의 반론보도청구권은 민법상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과는 별개의 것임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어 종래에 비해 이 문제에 대한 오해와 혼란의 소지를 많이 해소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위 언론기본법 및 정간법과 방송법 등의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이 민법상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로는, ① 입법연혁상 반론권제도를 채택한 독일 법을 토대로 한 것이라는 점, ② 민법과 별도의 개별법률에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만약 동법률 규정이 민법상의 그것을 주기적으로 반복한 것이라면 무의미할 뿐 아니라 상호 모순, 양분되어 논란만이 가중될 것이다), ③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은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하는데 반해 언론기본법 등은 언론사에 대한 청구 및 언론중재신청이나 법원에의 제소기간을 14일 내지 1월의 단기간으로 규정하였고, ④ 법원에 대한 제소에 앞서 전치절차로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으며, ⑤ 법원에서의 소송절차는 증명보다 그 증명도가 약한 소명에 의하고, 1심 재판과 동시에 그 확정 전이라도 곧바로 집행력이 부여되는 등 본안소송절차에 비해 여러 가지 특례가 인정되는 민사소송법의 가치분절차에 의 하도록 하고 있고, ⑥ 피해자가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게재를 요하는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 광고만을 위한 경우와 국가, 공공단체 등의 공개회이나 법원의 재판절차를 사실대로 보도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⑦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는 원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적 진술(해명)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이의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이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 비슷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으로는, ① 이 역시 민법상의 그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피해 구제의 수단이고, ② 헌법재판소 1991. 9. 16.자 89 헌마 155 결정의 소수의견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언론기본법이나 개정 전의 정간법 및 방송법은 그 용어를 「정정보도청구권」 또는 「정정보도」라 하여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아 관련 당사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구제 수단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며, ③ 그 행사의 요건으로서 피해가 있을 것을 요구하므로 단순히 원 보도내용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자나 제 3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④ 법조지 어디에도 민법상의 그것과의 관계에 대한 직접인 언급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제도의 시행 초기에 국민 일반은 물론 언론계나 법원조차 그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다소의 혼란과 시행착오 및 이에 따른 갈등과 불만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위 제도가 민법상의 그것과는 다른 반론권임을 분명히 한 대법원 1986. 1. 28.자 85 다카 1973 판결 18)이 나오기 이전의 하급심 판례들은 조문에 충실하게 반박문의 제목을 「정정보도문」이라 하고, 원 보도내용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반박 또는 조사결과 사실은 보도내용과 다름이 밝혀졌다는 등의 피해자의 주장을 본문 내용으로 기술한 다음 보도문 말미에 「정정보도신청인 아무개」라는 형식을 취하여 언론사가 원 보도내용을 정정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이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것인지 잘 알 수 없게 하였을 뿐 아니라,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의 보도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법문 규정에 집착하여 원 보도내용의 진실과 그 귀결로서 피해자가 구하는 보도내용의 허위성을 입증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였다. 한편 그 뒤의 대법원 1986. 12. 23.자 86 다카 818 판결에서는,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되, 다만 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언론활동의 마비 내지는 위축을 아울러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상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은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정정보도청구권과는 달리 보다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견해를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91. 9. 15.자 89 헌마 165 결정에서, "...부당한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정한 전통적인 일반 원칙과 절차에 따라 명예훼손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로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의 방법은 사후적인 것이고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의 곤란 등으로 말미암아 많은 시간과 노력의 소요됨으로써 명예회복의 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기에는 부족함이 적지 아니하다. 이에 반하여 반론권은 신속한 권리 구제의 필요성에서..."라고 판시 함으로써 정간법 등의 반론권이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는 전연 별개의 독립한 제도임을 보다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 정간법이나 방송법 등에서 규정한 반론보도청구권이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나 그에 기한정정보도청구권과는 다른 것이라면 그 당연한 귀결로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은

필요 없고 위 정간법 등에서 정한 요건만을 갖추면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양자는 서로 독립한 별개의 제도이므로 정간법 등에 불구하고 반론권과 별도로 민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양자의 구체적 차이점에 관하여는 뒤의 해당되는 곳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III. 반론권 행사의 요건

#### 1. 실체적 요건

##### 가. 청구의 주체와 상대방

##### (1) 청구의 주체

정간법등 19)은 '사실적 주장의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자가 전치절차로서의 중재절차나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해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사소송 일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을 자격 즉, 당사자능력을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자연인은 행위무능력자라도 권리능력자로서 당연히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단체의 경우에는 법 인격을 취득하였거나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춰야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 48 조), 그와 같은 실질을 갖추지 못한 단체의 경우 문제로 된다. 그런데 당사자능력을 엄격히 요구하여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학교, 관공서 등의 단체에 대하여 반드시 그 상급기관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춘 학교법인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름으로 권리를 행사케 하고 이들 산하기관에 대하여는 참여를 배제하면 사실상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일찍부터 판례는, 구 정간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신속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특수한 소권을 인정한 것으로서 그 절차나 당사자의 문제에서 엄격한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인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서울민사지법 1983. 8. 19.자 83 카 9145 판결)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례는 구성원의 의사결정기관이나 집행기관 및 규약 등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는 단체로서, 교리를 같이 하는 각 교회목사들의 집합체(서울민사지법 1983. 11. 25.자 83 카 22003 판결),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교육에 공용된 영조물에 불과한 학교(서울민사지법 1984. 5. 25.자 84 카 1598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 8. 16.자 84 나 2524 판결), 아직 사단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채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그 준비위원회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임(서울민사지법 1992. 11. 26.자 92 카기 646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청주지법 1990. 7. 21.자 90 카 1874 결정은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하부조직인 한국기자협회 충청북도지부에 대하여 법인격이나 사단,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는바, 회사나 관청의 국, 과등과 같은

단순한 소속기관 내지는 보조기관에 그치지 않고 정부관서 중 각 부처나 경찰서, 우체국, 읍·면·동사무소(현행 지방자치법상 법인격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등과 같은 행정기관, 각종 협회나 사단의 지부 등과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갖고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라면 그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판례의 태도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개정 정간법 제 16 조 제 7 항 및 방송법 제 41 조제 8 항, 종합유선방송법 제 45 조 제 9 항도 이러한 취지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당사자능력이 완화되는 이상 당사자표시정정이 나 피고경정 등에 있어서도 일반의 민사소송절차에서와 같은 엄격함을 요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판례도 같은 입장에서 단체와 그 대표자 상호간의 당사자변경신청을 관대히 받아주고 있다(서울민사지법 1983. 8. 19.자 83 카 9145 판결, 1983. 8. 26.자 83 카 17754 판결). 한편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그 성질상 이행의 소이므로 언론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면 이를 행사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체 판단을 받을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당해 보도와 개별적 관련성이 없거나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지언정 소 각하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대법원 1986. 1. 28.자 85 다카 1973 판결 역시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민사지법 1991. 4. 3.자 90 카 110595 결정은, 정정보도청구는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데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당해 보도내용으로 인하여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고 있으나 수긍하기 어렵다.

## (2) 상대방

구 언론기본법 및 개정 전 정간법에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의 경우 방송국장 또는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언론기관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와 위 발행인 등이 서로 달라 누구를 상대로 중재신청이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혼란이 있을 수 있었다. 발행인은 간행물을 발행하는 대표자(정간법 제 2 조 제 10 호)로서 자연인이므로 법인인 언론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해 법인이 일반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는 그간 관행상으로 20) 누가 발행인이나 편집인이냐에 관계 없이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상이나 당국에 정기간행물등록을 한 실질적인 대표자,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대표이사가 대표하게 된다)을 중재신청 및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왔었고, 판례도 모두 이를 그대로 시인해 왔다 그리하여 개정 정간법 제 16 조는 그 상대방을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언론사)로, 방송법 제 41 조 및 종합유선방송법 제 45 조는 방송국으로 각 개정하여 사실상 당해 언론기업을 상대방으로 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된 보도 이후에 당해 정기간행물 등이 폐간된 경우에 그 발행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피고적격을 그르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가?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12. 14.자 93 카합 1044 결정 및 93 카합 1011 결정은 개인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다 폐간하여 그 간행물을 통하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대표자는 더 이상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 아니어서 피고적격이 없어 그를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있으나, 이는 이행불능으로서 청구를 기각할 사유에 불과할 뿐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나. 청구의 대상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의보도가 반론권의 대상이 된다(정간법 제 16 조 제 1 항, 방송법 제 41 조, 종합유선방송법 제 45 조).

##### (1) 매 체

정간법과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 및 통신, 방송, 종합유선방송에 대하여 인정된다. 1991. 12. 31. 종합유선방송법이 제정, 공포되기 이전에는 유선방송에 대하여 언론기본법이나 방송법에 규정이 없어 의문이 있었으나 21) 종합유선방송법은 이를 명문으로 해결하였다. 개정 정간법은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동일한 제호로 연 2 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통신, 잡지, 기타간행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동법 제 2 조 제 1 호), 다시 신문, 통신, 잡지, 기타간행물에 대하여 입법적 정의규정을 두고 있으므로(동법 제 2 조 제 2 호 내지 제 9 호) 동법이 적용되는 것에 한해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통신의 경우에는 직접 자체의 방송 채널을 운영하거나 신문, 잡지 등을 간행하지 않고 국내외로부터 취재, 수집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므로 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더라도 다른 언론사가 이를 받아 보도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통신사 스스로 일정한 간행물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다른 언론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반론보도문의 게재나 방송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정기간행물의 한 종류로서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에 포함시켰다.22) 정기간행물이면 정간법 제 7 조 제 1 항에 의하여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발행하는 간행물, 법인 기타 단체나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및 순수한 학습자료나 상업광고만을 게재하는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모두 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정부기관의 간행물은 물론 사보나 회보, 교회의 주보, 기관지, 동호회지, 학습지, 백화점의 상품안내지 등도 그 대상이 된다. 다만 그 게재 내용상 주로 상품광고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굳이 간행물이라고도 할 수 없는 전단, 뼈라, 광고유인물 등은 정기성도 없겠지만 제호도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다. 정기간행물은 대개 정기적으로 일정한 시기에 간행되는 것이지만 당초 예정한 시기에 어긋나서 간행되는 것이라도 전체적, 객관적으로 보아 계속적으로 간행되는 것이면 모두 이에 해당하므로, 합본이나 호외 등에 대하여도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 방송의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유선방송의 경우 종합유선방송법상의 허가를 얻은 종합유선방송국은 물론 그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영세 유선방송에 대하여도 동법의 규정을 유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2) 공 표

공표란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의해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 또는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 책 41 페이지가 모두 빠져있음

또 자신의 추측이나 짐작, 감정 또는 나름의 판단 등을 근거로 한 사물의 인과관계나 타인에 대한 평가라도 그것이 사회관념상 존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사항을 주장한 경우에는 이를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교회의 돈을 타내기 위한 일환으로 자기들끼리 싸고 원고와 피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공갈, 협박을 일삼는 불량배다」, 「제 처자식도 내팽개치고 엉뚱한 곳에 정신을 팔고 있다」, 「부도덕한 방법으로 축재한 졸부」, 「상황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부나비처럼 뛰어든다」, 「돈을 우려내기 위한 사기극이다」라는 표현에 있어서 밑줄을 그은 부분은 관념적으로 어떤 사상을 묘사, 표현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그로부터 유형적 사실을 도출해 낼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반대로, 「파렴치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했을 리가 없다」, 「기생오라비같이 멀썩한 외모와는 달리 속내는 그야말로 칠혹 같은 이중인격자다」라는 등의 표현은 사람마다 그 같은 판단이나 평가를 달리 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서 이로부터 유형적 사실을 도출해 낼 수 없으므로 순수한 가치평가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양자의 구별은 당해 보도나 표현의 진정한 의도, 그것이 게재된 간행물의 성격 및 게재경위, 주된 독자층, 사회 일반의 가치관 및 언어생활상의 의미, 전후의 문맥과 행간에 내포된 의미 등을 객관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서울고등법원 1992. 8. 21.자 91 라 161 결정 참조 25)).<sup>26)</sup> 그리고 순수한 논평이나 논설, 비평, 의견 등 가치 평가적 주장이라도 그것에 전제되는 사실적 주장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부분은 반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제주지법 1994. 6. 16.자 94 카합 2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 3. 14.자 95 라 216 결정), 「원가의 5 배나 되는 가격에 전매하는 등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각목이나 쇠파이프 등을 들고 닥치는 대로 두들겨 패는 등 비인간적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등으로 가치평가적 주장의 전후에 사실적 주장을 예시하여 그 평가를 토대로 한 경우에 그 예시된 사실적 주장 역시 반론의 대상이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판례에 나타난 사례를 보면, 「평상시에 선배도 몰라보고 우쭐대기만 좋아하고 거드름 피우기를 생활화하지 않은 다음에야 어제 감히 남의 큰 공로를 그렇게도 깔고 몽갓 수 있을까. 아무리 감투가 좋아 아무나 뒤집어 쓰고 좌충우돌 마구 날뛰는 꼴이 가관스럽다」는 내용의 실명 칼럼기사(서울민사지법 1987 1. 11.자 87 카 40175 판결), 「시의회 의원들은 비공식 개별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 관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을 특정지역과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의 압력을 행사해 오면서 공익과 일관성을 갖추어야 할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먹칠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전문 형식의 기사(전주지법 1992. 10. 29.자 92 카기 50 판결), 「학교의 학사업무, 학생징계, 교사징계

등이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장의 단독적인 전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비판적 기사(서울지법 남부지원 1993.10. 8.자 92가합 16462 판결)와 같이 어느 정도의 가치지향적 판단이나 평가를 수반한 관념적 표현에 대하여 모두 사실적 주장으로 보고 이에 대한 반론을 허용하고 있고, 「특정집단 특수 이해관계인 등의 사의에 의해 계획되는 개발투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규관광지개발계획을 요청한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군사 독재정권하의 권력기구, 경제집단 심지어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한 인허가 토지 투기세력들이 공공의 개발계획을 막후에서 주물러 왔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는 보도에 대하여, 「투기」나 「배후」라는 표현에 평가적 요소가 개재되어 있어 그러한 기사내용이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가 하는 의심이 있지만 우리의 언어관념상 부동산 「투기」는 실수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전매차익만을 노리는 일정 규모나 횡수 이상의 부동산거래를 말하고, 「배후」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나 뒤에서 무슨 일을 조종하는 것을 뜻하므로 비록 막연한 점은 있지만 사실적 주장에 관한 내용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제주지법 1994. 6. 16.자 94가합 27 판결).

또 대법원 1991. 1. 15.자 90다카 25468 판결은,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민정당 김용태 의원이 전라북도의 예산상 특별배려요청에 대하여 모두야당의원만을 뽑았으니 뜨거운 꼴을 한번 보아야 한다고 싹쓸이 발언을 하였는데, 전북도민들은 이러한 김용태 의원의 발언을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규효 전 건설부 장관의 싹쓸이 발언에 이은 <제 2의 싹쓸이 발언>으로 간주하고, 갈수록 골이 깊어지는 지역감정을 개탄하였다」는 보도에 대하여, 그 기사내용이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한 전북도민의 반응이라는 사실관계를 취재하여 보도한 것이므로 정간법 제 16 조 제 1 항 소정의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고, 전북도민의 반응에 평가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그 반응을 보도한 위 기사까지도 평가 내지 의견진술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이규효)의 반론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민들의 반응으로서 도민들이 김의원의 발언을 <제 2의 싹쓸이 발언>으로 간주하였다거나 개탄을 하였다는 내용은 신문기사에서 통상적으로 기자나 신문사의 의견 내지는 평가를 여론의 형식을 빌려 보도하는 관행에 따른 것으로서, 그것이 문리적인 내용 그대로 실제 전북도민들이 그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신문사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그 평가의 내용 역시 「제 2의 싹쓸이 발언」이라거나 「개탄」이라는 순 가치평가적인 것이므로 이를 사실관계에 관한 보도로 본대법원의 판시에는 의문이 있다.27)

이와 반대로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구원파는 율법폐기론자」라는 등의 신학대학 교수의 기고문을 게재한 경우(서울고등법원 1992. 8. 21.자 91라 161 결정), 「신청인을 비롯한 많은 사설 투자자문사들이 주요 경제지에 크게 광고를 내고 있어 이들 클럽이 사기성이 없다면 그 많은 광고비를 어디에서 충당하겠느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 사설 클럽은 월간 또는 주간 주식 정 보지를 보내 준다는 명목으로 6개월간 30만원씩의 회비를 받는다 하면 공공연히 지사까지 갖추고 있어 지방의 신규 투자자들에게 한층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지적됐다」는 전문 형식의 기사 중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으로 지적됐다」는 부분은 그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한 타인의 논평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지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경우(서울민사지법 1990. 5. 25.자 89 카 28984 판결), 「...정부나 언론을 몰아붙이는 성토를 하자는 뜻인지 가두시위라도 벌이자는 것인지 매우 아리송하였다」, 「기관원이 감시를 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분위기를 경화시킬 염려가 있는 이야기라면 안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회의장면을 계속 비디오로 촬영한 것은 비용이 상당할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혹시 WCC에서 자금을 타내기 위한 보고용이 아닌지. 만일 그렇다면 사전에 산업선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금 규모나 사용처를 밝혀야 할 것이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경거망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WCC에서 돈 타내기 위한 연극에 놀아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등의 내용은 기고자가 회의 진행상황을 보고 느낀 바를 논평 내지는 비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사실적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경우(서울민사지법 1983. 5. 24.자 83 카 7933 결정), 「최교사로 인하여 학교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 국민학교 교육이 무너져 가고 있다」, 「최씨는 5 학년에 알맞지 않는 교육을 시켰고 사회 전체가 합의를 본 교과서 내용에서 벗어난 주관적인 주장을 학생들에게 강요함으로써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내세워 학생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교육자 양성지도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으며...」 라는 부분은 언론사의 의견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사실보도가 아닌 이상 비록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도와는 달리 피해자인 최교사의 교육활동을 잘못 평가하여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반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한 경우(서울지법남부지원 1992. 2. 20.자 89 카 8917 판결), 「범민련은 지난 90년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범민족대회>개최 등 이른바 범민족통일운동을 벌인다며 남·북한 및 해외 인사 9명이 이른바 <3 자회담>을 갖고 태동시킨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합의에 따라 북한의 이른바<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부위원장 윤기복을 본부장으로 하는 <북측본부>와 재독 교포 윤이상 씨를 위원장으로 하는 <해외본부>가 지난해 1월 결성되었으며... 이들과 함께 결성하려던<남측본부>는 핵심 인사들이 구속되는 바람에<준비위원회>만 발족시켜 강희남 씨를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삼아 활동해 오고 있다」 고 전제한 다음 「따라서 범민족대회를 위한 범민련의 제 1 추진 주체는 베를린 3 자회담을 주도한 북한 공산정권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고 한 보도는 범민련의 제 1 추진 주체에 관한 기자의 주관적인 판단 내지는 의견에 불과하고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고 한 경우(서울민사지법 1992. 11. 26.자 92 카기 649 결정), 「재산평가 10분의 1로 축소」라는 제하의 「오 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본인 명의의분당구 대장동 산 40의 1 임야 1 필지 6천 57 m<sup>2</sup>(1천 8백 35 평)는 공시지가로 환산하더라도 1억 6천 5백만원인데 이를 2천 3백 70만원으로 신고했으며, 민자당 중앙당에는 이 임야가 가족묘지인 문중 산으로 8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2명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지분은 등기명의로 불구하고 8분의 1 밖에 안되므로 공시지가로 환산한 가액의 8분의 1 가격을 신고한 것은 축소신고가 아니라는 피해자의 반론에 관하여, 그 주장이 사실이라도 그 같은 재산신고 내용이 축소신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보도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언론사의 평가 내지 의견진술에 불과하다고 한 경우(수원지법 성남지원 1993. 7. 30.자 93 카합 312 판결), 「모두들 제 발이 저리는

모양이다」라는 제하에 구 의회 의원들이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 외에 아무도 모르게 해외연수계획을 진행하여 유럽시찰을 다녀오기로 했는데, 의원들이나 사무국 직원들도 모두 의장에게 물어보라는 식으로 답변을 피하여 해외연수 내용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 중 「제 발이 저리다」는 제목부분은 칼럼의 필자가 자기의 의견을 나타낸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불과하다고 한 경우(서울지법 1996. 1. 15.자 95 카기 3941 결정), 자신의 종파를 가리켜 「베뢰아 집단」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자신들이 신앙적인 면이나 윤리적인 면에서 마치 불순한 집단인 것처럼 오인 받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사용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한 경우(서울지법 1996.1. 8.자 95 카기 5440 결정) 등은 그 기사의 내용이 필자의 의견이나 평가 등 가치판단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반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사례 가운데, 「사기성이 없다면 광고비를 어디에서 충당하겠느냐」, 「WCC에서 자금을 타내기 위한 보고용이 아닌지」, 「돈 타내기 위한 연극」, 「주관적인 주장을 학생들에게 강요」, 「범민련의 제 1 추진 주체는 베를린 3 자회담을 주도한 북한 공산정권」 등의 기사에서 밀줄친 부분은 필자의 순수한 내면적 감정이나 가치판단을 나타낼 것이라기보다는 사상을 관념적으로 표현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서까지 반론을 허용치 아니한 판례의 태도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 (나) 주 장

주장의 사전적 의미는 타인에게 자기의 생각이나 견해, 인식 등을 전달, 설득하거나 동조하게 할 의도로 외부에 나타내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여론 형성이나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 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은 대체로 주장에 해당할 것이다. 문제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단정적 주장을 하는 대신에 타인의 말을 인용하거나 여론 형식을 빌리거나, 타인의 말을 그대로 전제하는 등의 간접적·암묵적인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표현한 경우에 반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이다. 언론사가 기사를 보도하는 수단이나 방법, 형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스스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자신의 견해나 주장으로서 직접 보도하는 경우, 독자투고의 방식 또는 정보원이나 취재원을 밝혀 그 주장을 전제하거나 인용하는 경우, 어퍼어떠한 소문이나 풍문이 돌고 있거나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는 경우, 자신이나 타인의 추측 또는 전망형식으로 보도하는 경우, 통신으로부터 제공받았음을 직·간접적 방법으로 표시하여 보도하는 경우 등이다. 위의 어떠한 경우이건 당해 간행물이나 방송을 통하여 공표된 이상 이미 그것은 당해 언론사의 주장이 되는 것이므로 직접적인 방법으로 보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면책될 수는 없으며, 또 그 같은 정보를 자신이 직접 수집·취재한 것이 아니고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라도 마찬가지다.

판례도 다른 정보원이나 취재원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거나 이를 인용, 전제한 경우에 관하여,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으로부터 받은 「통일교에 대한 비판강좌에 대한 안내」라는 공문에 근거하여 통일교의 극비 혼음교리 내막 등을 폭로하는 강연이 열린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경우(서울민사지법 1983. 8. 19.자 83 카 9145, 9146 판결),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이 치학신보에 투고한 글을 그대로 게재한 경우(서울민사지법 1987. 12. 11.자 87 카 40175 판결), 수사검사나 경찰기록 또는 경찰관의 의견을 그대로 옮겨 보도한 경우(서울민사지법 1989. 7. 7.자 89 카 11518 판결, 1994. 12. 27.자 94 카기 4890

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 2. 6.자 89 나 30506 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6. 5. 9.자 95 카합 4287 결정), 다른 일간신문의 기사와 수사관의 진술을 토대로 보도한 경우(서울민사지법 1991. 11. 15.자 91 카 65412 판결, 수원지법 성남지원 1993. 7. 30.자 93 카합 312 판결), 하인의 주장 형식으로 보도한 경우(서울민사지법 1992. 11. 26.자 92 카 77904 판결, 제주지법 1994. 6. 16.자 94 카합 27 판결), 타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토대로 이를 요약 보도한 경우(부산지법 1996. 1. 10.자 95 가합 23258 판결)에 있어서 모두 반론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 소문이나 풍문, 여론 형식의 보도에 관하여, 국회의원의 싹쓸이 발언에 대하여 전북도민들이 개탄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인용한 경우(서울민사지법 1989. 12. 29.자 89 카 52256 판결), 어떤 사실이 「알려졌다」, 「지적되고 있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한 경우(서울민사지법 1990. 5. 25.자 89 카 28984 판결, 1990. 12. 7.자 90 카 7463 7 판결, 1992. 11. 26.자 92 카 77904 판결)에 있어 모두 반론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며, 「그가 꿈에도 그리는 <조국통일>은 과연 어떤 것일까. 자신이 44년간 0.7평 독방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적화통일>이 그의 꿈이 아닐까.」라는 추측의 형식으로 신청인이 마치 적화통일을 꿈꾸고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하여, '사실적 주장'에 있어서의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 직접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가능성의 추측 또는 암시와 의문의 제기도 사심 없는 독자의 입장에서 이를 사실상의 시인적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반론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1996. 3. 14.자 95 라 216 결정).

한편 언론사 스스로 작성한 기사나 글이 아닌 외부인이 기고한 칼럼 형식의 글(서울민사지법 1990. 10. 10.자 91 카 81540 결정, 서울지법 1996.1. 15.자 95 카기 3941 결정)이나 수기(서울지법남부지원 1991. 9. 9.자 91 카 7208 판결)에 대하여도 동일한 이유로 언론사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보고 있다. 그리고 주장의 표현 형식은 비단 문장에 한하지 않을 것이다. 사진, 그림, 만화, 개리커처 등 형상적 표현수단을 통해서도 일정한 사상을 주장할 수 있고 시, 소설, 수필 등과 같은 예술표현형식을 통해서도 사실적 주장이 가능한 이상 모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견해가 없다. 소송에까지 이른 사례는 없지만 만화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과정에서 합의를 통하여 반론이 허용된 사례가 있다.<sup>28)</sup>

문제는 광고이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① 사인 간의 분쟁에 대하여 언론사가 아무런 책임 없이 손해를 입을 수 없고, ② 광고는 광고주의 의사를 그대로 게재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까지 언론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③ 정간법도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반론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한다. 그 반면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① 광고에도 사실적 주장이 있을 수 있으며, ②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광고이든 비광고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고, ③ 언론사가 자신의 비용으로 반박광고를 게재함은 책임 없이 큰 부담을 지게 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뒤에 볼 '정당한 이익'의 요건에 의하여 적절히 해결할 수 있으며, ④ 광고, 특히 의견광고 중에 포함된 내용에 대한 반박이 반드시 상업적 목적만을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등의 논거로 이를 긍정한다. 어느 쪽 견해나 수긍할 만한 점이 있다. 그러나, 광고는 광고주의 의견을 그대로 게재한다는

점에서 독자투고와 비슷한 면도 있지만, 독자투고는 여론 형성을 위한 공익 목적에 의한 것이고 비록 독자의 이름으로 주장이 이루어지기는 하는 것이지만 이를 채택하여 게재한 언론사 역시 간접적으로 이에 동조하고 독자의 주장을 통하여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임에 반해, 광고는 오로지 광고주의 상업적 이익이나 독점적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를 게재한 언론사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29), 영리기업으로서의 언론기업이 그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광고주와의 광고계약에 의하여 이를 게재하는 점에 비추어 그 반대 당사자로 하여금 언론사에게 무료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 광고주와 상대방 간의 형평이나 균형에도 맞지 않으며, 광고주의 재반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영리 기업인 언론사에게 지나친 제한이 되어 반론권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업광고이거나 의견광고이거나 불문하고 이를 부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절충적 견해로서, 피해자의 비용으로 반론을 하게 하여 언론사에 대하여는 피해자와의 광고계약 체결의무를 지게 함이 바람직하다는 설도 있다.30) 판례 가운데는 의견광고란의 성명서에 대하여 반론을 허용한 사례 31)도 있으나(서울민사지법 1983. 11. 25.자 83 카 22003 판결), 광고는 광고주와의 광고계약에 의하여 광고주의 개인적인 의사표시를 그대로 게재하여 주는 광고주의 주장이지 언론의 사실적 주장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광고는 언론사가 대가를 받고 게재하여 주는 것임에 반해 반론보도는 무료로 게재하여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무기 대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광고주 또는 언론사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구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반론보도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것이 대세이다(서울민사지법 1984. 11. 30.자 84 카 34374,34375 판결, 1992. 9. 15.자 92 카기 474 판결).

#### 다. 행사의 요건

##### (1) 당해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것

언론기본법 이래로 요구되는 요건이다. 그 취지는 청구인이 당해 보도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 그에 대하여 반론이 필요한 정도의 피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단순히 보도내용과 견해를 달리하거나 흥미를 위한 반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반론권의 행사가 한편으로는 공정한 여론 형성 및 진실한 정보의 전파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더욱 고장, 신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는 하지만 언론사에 대하여는 상당한 언론 자유의 제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보도와 이해관계 없는 자에 대하여 까지 무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할 경우 언론사에게 지나친 부담을 가하여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요구되는 필요최소한의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적 주장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고, 또 그 보도내용으로 인해 어떤 손해가 있어야만 한다.

##### (가) 개별적 관련성

보도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보도내용이 자신에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당해 보도내용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간에 어떤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례도, "정간법에서 말하는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된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1986. 1. 28.자 85 다카 1973 판결, 서울민사지법 1992. 9. 15.자 92 카기 474 결정, 서울지법 1996. 1. 25.자 95 카기 5816 결정), 그러나 반드시 당해 보도내용 중에서 성명이나 주소 등 신분적 표시가 직접적으로 표시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연령, 성별, 학력, 성씨, 별명, 직업, 직장이나 사회에서의 지위, 주소, 거소, 국적, 신체적 특성(예컨대 신장, 얼굴모양, 헤어스타일, 복장, 질병이나 신체장애의 유무), 사진, 캐리커처, 특정인과의 신분관계(예컨대 상사와 부하 또는 동료, 부모와 자식 또는 형제자매 등의 친족관계 등), 취향이나 성향, 습관(예컨대 주정뱅이, 골초, 사투리 등의 말씨, 버릇) 등 여러 가지 표식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나 특정다수인의 시각에서 보아 관련자를 연상할 수 있으면 족하다.

이때 그 기사가 게재된 간행물의 배포 대상 독자층 및 이들의 통상적인 지식이나 관심도, 그 보도 전후에 다른 언론매체에 의하여 관련 기사가 보도된 여부 등의 주변사정도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사내용 중에 특정인을 연상할 수 있는 아무런 표지가 없더라도 피해를 입는 수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금모씨가 국내 최초로 방수복을 개발하여 특허를 냈다는 보도내용과는 달리 박모씨가 최초로 개발, 특허를 냈다면, 이 경우에 박모씨는 기사내용 중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그 기사내용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할 것이므로 개별적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sup>32)</sup> 판례에서 개별적 관련성을 인정한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광주시 북구 건축과 근무 공무원 임(림)모씨」라고 지칭한 경우 비록 성명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신청인을 가리키는 것임을 편견 없는 상당수의 독자나 그 기사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이를 별 어려움 없이 알 수 있다고 한 사례(서울민사지법 1982. 9. 3.자 82 카 18633 판결), 「예장합동측 P 노회. 노회장 K 목사」가 대한 예수교 장로회 평동노회 및 노회장 김만규 목사를 가리키는 것임을 편견 없는 상당수의 독자나 위 기사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별 어려움 없이 알 수 있다고 한 예(서울민사지법 1984. 11.30.자 84 카 35089 판결), 「대학생 아들과 중학교 3년 생인 쌍둥이 남매 정훈이와 정은이의 어머니인 강남구 도곡동 거주 45세 이현선이, 정훈이가 주위의 기대로 정신적 압박을 받아 성적에 지나친 신경을 쓰면서 불안해 하다가 학교시험 전날인 1986. 5. 7. 저녁식사 중 갑자기 베란다로 뛰어가 투신자살한 데 대하여 자식들에게 평소 좋은 성적을 올리라고 강조하였던 것을 후회한다」는 내용의 수기 형식의 월간지 기사에 대하여, 신청인은 강남구 도곡동 우성 아파트에 거주하는 45세 주부(실명은 진부자)로서 실제로 대학생아들과 중학교 3학년생인 쌍둥이 남매를 두고 있고, 쌍둥이 남매 중 아들인 최지성군이 1986. 5.7. 1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 사망하였고 그 사고가 이미 신문에 보도까지 된 이상 그 주소, 연령,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이나 아파트 맨 윗층에 거주하는 점 등이 신청인과 일치하여 비록 어머니와 학생의 성명을 다르게 표시하고 기사속의 사진도 타인의 것을 게재하였더라도, 신청인을 알거나 위 사고가 보도된

신문기사에 관심을 가졌던 독자라면 그 기사 중의 이현선이 신청인을 가리키는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한 예(서울민사지법 1986. 9. 26.자 86 카 28775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 3. 18.자 86 나 4096 판결), 치학전문지에 게재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치의신보담당 이사」라는 보도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보담당 이사로서 동협회 기관지인 치의신보의 편집책임을 맡고 있는 신청인을 지칭한다고 볼 것이라고 한 예(서울민사지법 1987. 12. 11.자 87 카 40175 판결), 신청인이 32 세로서 서울대학교 재학시 학생운동에 관여하였고 1988. 7. 경부터 성남노동자민주투쟁연합 의장으로, 1989. 2. 경부터는 성남노동운동단체협의회 공동대표로, 1989. 6.30. 부터는 성남민주노동자연합 의장으로 각 활동하고 있다면, 「민청련 성남지역 간사 연모씨(36 세, k 대)가 북한의 국내 공작조직의 일원으로서 용인, 성남 지역의 노동현장 및 대학가 운동권 학생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라는 기사 중 그 정확한 나이와 이름, 출신 대학의 첫머리가 상이하기는 하지만 위와 같이 신청인이 30 대로서 대학 학생운동에 관여한 바 있고, 현재성남 지역의 노동운동에 있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씨가 희성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보아 이는 신청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예(서울민사지법 1989. 12. 29.자 89 카 46152 판결), 신청인 김우룡은 서울커뮤니케이션연구소의 설립자인 동시에 방송제도연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해 왔고, 신청인 차인태는 현직 문화방송 아나운서실장으로 당해 기사가 보도될 무렵 문화방송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협약무시, 부당인사관여 등과 같은 내용의 의혹을 사고 있었던 신청인들의 경력이나 평판 및 「한국커뮤니케이션연구소가 정부의 방송구조 개편작업 과정에서 방송제도연구위원회와 유관기관들을 연결하는 일종의 외곽기능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소에는 방송제도연구위원회에 참여했던 K 교수와 현직 MBC 방송인 C 씨 등이 주축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커뮤니케이션연구소나 서울언론클럽 등이 이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기사가 나간 후 MBC 노조특보에서 위 기사를 인용하면서 위 기사 중의 K 씨와 C 씨는 바로 신청인들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신청인(기자협회보)의 독자로 예상되는 신문 및 방송기자들로서는 그것이 신청인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본 예(서울민사지법 1990. 7. 19.자 90 카 41568 판결), 신청인이 1991, 1. 25. 범민련 남측본부결성준비위원회 재정소위위 원장으로 선출되어 그 직책을 맡고 있다면 「범민련 남측본부결성준비위원회에는 조직소위, 재정소위, 정책소위 등 소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는 사실상 주사파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는 실정이다」라는 기사와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한 예(서울민사지법 1992. 11. 26.자 92 카기 649 결정), 「서울 S 국민학교 2 학년 김부름군」, 「서울 신림동동네학교」라는 표현과 함께 김군과 그 어머니의 사진이 방송되었고 실제로 김군이 방송기사에서 지적된 대로 서울 신림국민학교로부터 회기등 소재 사립학교인 삼육국민학교로 전학 간 사실이 있음을 종합하면 「서울 S 국민학교 2 학년 김부름군의 어머니 오선희 씨가 담임선생님의 촌지요구를 듣고 돈봉투를 요구한 선생님의 횡포에 맞서 서울 신림동 동네학교에서 돈봉투를 받지 않는 회기 등 사립학교로 전학시켰다」는 요지의 기사 중 「서울 S 국민학교」, 「서울 신림동 동네학교」는 서울 신림국민학교를 가리킴을 그 학교의 교사, 학부모, 동네주민 등 그 학교와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불특정 다수인들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인정한 예(서울지법 남부지원 1993. 9. 6.자 93 카합 792 판결), 기사에서 신청인인 (주)제주온천의 이름을 명백히 거명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신청인이 온천을 개발하고 있는 지역을 밝히면서 「이 지역에서 온천을 개발하고 있는 제주온천」이라고 표현한 이상 관련성이 있다고 한 예(제주지법 1994. 6. 16.자 94 카합 27 판결), 일간 현대문화신문에 신청인의 이름이 전부 표시되지는 않고 「유명탤런트 진모(26)양」, 「친모양은 중견모델로 더 잘 알려져 있다」고만 표현되었다더라도 광고업계 및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연예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탤런트이자 중견모델로 잘 알려진 26 세의 진모양」이라고 하면 이는 신청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한 예(서울민사지법 1994. 10. 27. 자 94 카기 3509 결정), 방송에서 「최모씨」라고만 표현하여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화면에서 최씨를 식별할 수 없도록 위에서 얼굴 아래 부분만을 촬영하였으며 그가 경영하는 세탁소의 상호 등은 드러내지 않은 채 세탁소 내부에서 인터뷰하는 모습만을 촬영한 후 음성을 변조하여 보도하긴 하였으나 「연애결혼한 최모씨」, 「결혼 16년째이며 현재 아내의 폭력으로 이혼소송 중」이라는 등의 표현을 하였고, 취재 당시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이를 목격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최씨의 처인 신청인이나 최씨를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보도내용과 화면 등을 종합하여 그 보도내용이 신청인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한 예(서울지법 남부지원 1994. 11. 29.자 94 카합 1797 결정), 현재 영동세브란스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이전에 다른 병원에 근무할 때 발생하였던 의료사고 관련 분쟁을 보도하면서 영동세브란스 병원의 건물 및 병원 표식을 화면에 방영한 경우 위 병원이 의료사고나 의료분쟁과 관련되어 있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보아 개별적 관련성을 인정한 예(서울지법 남부지원 1994.5. 23.자 94 카합 337 결정 33)), 「거물간첩이 선실이 구축했던 남한조선노동당의 전위단체 5. 1 등맹 조직원 13명이 구속되었다」며 구속자 명단을 보도함에 있어 신청인들의 이름을 연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명을 사용하고 출신 대학과 연령, 직업만을 사용하였더라도, 신청인들이 실제 5. 1 동맹사건과 관련된 구속자들이고 다른 일간신문에는 실명으로 보도가 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기사 중의 구속자들이 신청인들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 한 예(서울지법 1996. 1. 25.자 95 카기 5816 결정)가 있다.

반대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한 타인의 견해를 보도한 기사에 대하여 학술적 오류를 지적하거나 그 일부 내용을 이미 자신이 밝힌 바 있다는 반론을 구한 경우에 개별적 관련성을 부인한 예(서울민사지법 1982. 10. 21.자 81 카 36289 판결), 자신이 기고한 원고를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 변경, 첨가하여 게재함으로써 명예훼손 등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신청인은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 그 자체를 잡지에 발표한 주체적·능동적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그 공표된 내용 안에서 거론되는 등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예(서울민사지법 1983. 8. 26. 자 83 카 17754 판결 34))에서는 개별적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단체 및 집단과 그 구성원 일방에 대한 보도가 있는 경우에 다른 일방이 그 기사내용과 개별적 연관성 및 피해가 있는지 여부가 자주 문제 된다. 피해의 유무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개별적

연관성에 관하여 보면, 대체로 어느 일방에 대한 보도가 있으면 다른 일방을 연상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자 간에는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기사 내용이 오로지 어느 일방만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여 다른 일방은 그 일방과 형식적인 관계가 있을 뿐 그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어떤 연관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이를 부정할 것이다. 사자와 그 유족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판례를 보면,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는 그 학교장에 대하여도 관련이 있다고 한 예(서울고등법원 1985. 8. 16.자 84 나 2524 판결)가 있는가 하면, 「파스퇴르 최사장 고함지르며 샷대질 증언」이란 제하에 파스퇴르유유의 (주)성진낙농 대표인 최명재씨가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원들에게 고함을 치고 손가락질을 해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에 대하여 기사내용 중에 신청인인 파스퇴르유업 주식 회사를 가리키는 「파스퇴르」라는 말이 들어 있기는 하나, 이는 신청인 회사와 (주)성진낙농의 대표이사인 최명재씨를 특정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여질 뿐 위 기사내용만으로는 동기사와 신청인 회사 사이에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한 예(서울민사지법 1989. 8. 18.자 88 카 62228 판결), 특정 교회의 목사를 유령으로 그려 기사를 게재한 경우에, 단체와 그 구성원간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원에 대한 사실적 보도로 인하여 그 단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간접적으로 개별적 관련성이 없음을 인정한 예(서울지법 1996. 1. 8. 자 95 카기 5440 결정)와 같이 이를 부정한 경우도 있는 바, 그 기준은 대체로 위에서 지적한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컨대, 호남사람, 한국인, 흡연자, 장애인 등과 같은 관념적 집단의 경우 집단과 구성원 간에 이해관계를 같이 하여 집단에 관한 기사내용으로 인하여 사실상 그 구성원이 피해를 입는 수가 있더라도, 이와 같이 그 집단이 관념적인 것에 불과하여 이로부터 그 구성원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집단에 관한 기사에 대하여 그 구성원은 개별적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피 해

당해 기사의 내용이 특정인과 개별적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론이 허용되려면 그 같은 보도내용으로 인해 특정인의 권리나 보호 법익에 어떤 손해가 있어야만 한다. 그 보호 법익은 대개는 명예나 신용과 같은 인격적 법익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나 매출감소 등 기업활동이 저해되는 등으로 재산상의 법익에 침해될 수 있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판례가 '피해를 입은 자'를 가리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자라고 판시한 것(대법원 1986. 1. 28. 자 85 다카 1973 판결, 서울민사지법 1992. 9. 15. 자 92 카기 474 결정 등)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

서울민사지법 1983. 8. 26.자 83 카 17754 판결은, 일본 전문가인 신청인이 언론사의 청탁에 따라 「집단지향성과 일본인의 우상」이라는 제목의 원고를 써서 기고하였던 바, 언론사가 임의로 그 일부를 삭제, 변경, 첨가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일본 전문가로서의 사회활동에 손해를 끼쳤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는 당초부터 언론기본법에서 예상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청인은 민법 또는 저작권법(예컨대 동법

제 16 조의 원상유지권) 등에 기한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몰라도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를 함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저작권은 그 보호 법익이 아님을 판시하고 있다.<sup>35)</sup> 한편 피해는 사회 일반 보통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기사의 내용이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신용, 평판 등을 떨어뜨리거나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같은 내용이 일반인에게 알려짐으로써 관련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어야 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다. 판례도 많은 경우에, 어떤 보도가 있으면 그로 인하여 경험상 피해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서울민사지법 1993. 11. 15.자 93 카기 3887 결정, 1993. 12. 11.자 93 카기 3786 결정, 서울지법 1996. 1. 3.자 95 카기 5706 결정). 따라서 당해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느냐 여부는 객관적 시각에서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기사의 제목과 그 배치,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및 전후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기사가 독자나 시청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이나 메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서울지법 서부지원 1996.1. 26.자 94 가합 5021 판결, 서울지법 1996. 8.22.자 94 가합 98592 판결 참조)판례 가운데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예로는, 다른 학자의 독도관련 주장이나 견해를 인용 보도한 기사와 관련,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이 허구의 사실을 보도하여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침략행위를 합리화시키는 표현을 하였고,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조선과 일본 간에 1904년 한·일의정서 및 제 1차 한일협약이 체결 되었다더라도 1910. 8. 29. 일본에 병탄될 때까지 대한제국은 엄연히 독립된 주권국가임에도 대한제국의 독립국 형태를 격하시켜 그 주권을 손상시키는 표현을 하였으며, 그 일부 주장이나 업적은 이미 신청인 자신이 탐구하여 밝힌 바 있음에도 그 경위를 밝히지 않은 채 마치 그것이 다른 학자의 독창적인 발견, 업적인 양 표현함으로써 신청인의 저작권 등이 침해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기사 중에 신청인의 구체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신청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사실적 주장이 없고, 신청인의 견해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다른 학자의 견해를 기사화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신청인의 저작권이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예(서울민사지법 1982. 10. 21.자 81 카 36289 판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전도부 산업선교위원회가 개최한 산업선교정책협의회에서 동 선교위원회 간사로서 연설을 한 신청인에 대하여 그 회의 참관기사 중에 「주먹을 불끈 불끈 쳐들고 액션액션하였다」, 「기관원이 감시를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sup>36)</sup>은 신청인을 모함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피해를 입히는 성질의 보도로 볼 수 없다고 한 예 (서울민사지법 1983. 5. 24.자 83 카 7933 결정), 신청인이 법원에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신청을 하여 1, 2심 모두 승소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정정보도청구라는 소명으로 민법상의 손해배상으로서의 정정보도 및 사과문의 게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청구취지를 사과문 게재 및 위자료청구로 변경하였으나 결국 패소한 경위를 보도한 기사와 관련, 신청인이 패소한 소송이 정간법상의 정정보도청구인 양 오해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법원의 사건명은 한 번 정해지면 청구원인이나 청구취지의 변경에 관계 없이 사건종결에 이르기까지 변경될 수 없는 것이고, 기사의 구성 및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인이 패소한 것으로 보도된 사건은 소명이 정정보도청구이나 그 내용은 잘못된 기사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및 사과문 게재임을 쉽사리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 변경과정을 일일이 보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예 (서울민사지법 1984. 7. 13.자 84 카 17261 판결, 1985. 6. 11.자 85 카 8825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 1. 18.자 84 나 3255 판결, 1986. 7. 14.자 85 나 2457 판결), 신청인 노회의 노회장인 K 목사가 임시노회에서 대성교회 박윤식 목사에게 대한 영입작업을 한 흑막이 있고, 독단적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반대파를 강제로 회의장에서 퇴장시켰으며, K 목사는 20 년간이나 같이 살아온 조강지처를 버리고 불륜행각을 벌이는 부도덕한 인물로서 통일교 자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 왔으며, 그 아파트 출입문에 소속 교단도 아닌 다른 교단교회의 교패가 붙어 있는 등 신앙이 무절조하다는 기사내용은 신청인 노회의 노회장 K 목사와 박윤식 목사에게 피해를 가하는 사실적 주장의 기사일 뿐, 단체인 신청인 노회에 대하여 피해를 가한 기사로 볼 수 없고, 신청인 노회의 대표자인 노회장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그로 인해 단체인 신청인 노회가 피해를 입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예(서울민사지법 1984. 11. 30.자 84 카 35089 판결),<sup>37)</sup> 사회정화위원회를 찾아가 학교측이 동료 교사들을 부당해임시켰다는 진정을 한 뒤 학교측으로부터 진정교사들이 해임되었고, 이에 맞서 해임교사들은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하여 그 사건 발생 당시의 학교법인 이사장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사건 발생 후에야 취임한 교장은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예(서울민사지법 1985. 7. 27.자 85 카 20576 판결 38)), 중앙일보 사회면 날씨난에 게재된 우리나라 지도에서 북쪽이 남쪽보다 더 축소되어 있어 진실에 반할 뿐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무시하고 통일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 자체로써 신청인에게 어떤 구체적인 피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예 (서울민사지법 1991. 4. 3.자 90 카 110595 결정) 등을 들 수 있다.

피해가 있어야만 신청인의 반론청구가 이유있게 되므로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고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즉, 피해의 유무는 실체적 요건이지 소송요건이 아니다. 판례도 신청인이 당해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정정보도청구권의 요건을 흠결한 것을 이유로 신청(청구)을 기각함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6. 1. 28 자 85 다카 1973 판결, 서울민사지법 1989. 8. 18.자 88 카 62228 판결 39)) 그런데, 서울민사지법 1991. 4. 3.자 90 카 110595 결정은, 정간법 제 16 조 제 1 항의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의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은자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아무런 피해를 입은 바가 없는 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고 있는 바, 이는 그 실체를 오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다) 원 보도내용의 진실여부

이미 반론권의 성질을 논하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론권은 보도된 내용에 대한 관련자의 반박을 게재하는 데 기본 취지가 있으므로 원 보도내용 진실이냐 아니냐는 반론권 행사의 요건에 아무런 관련이 없고, 따라서 법원으로서 원 칙적으로 뒤에서 살펴볼 '반론문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이상 원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심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6. 1. 28.자 85 다카 1973 판결, 1991. 1. 15.자

90 다카 25468 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3. 12. 20.자 93 카합 1107 판결, 제주지법 1994. 6. 16.자 94 카합 27 판결).40)

물론 기사의 내용이 진실에 반할 경우 관련자의 피해가 훨씬 크고, 또 대부분의 경우 반론을 요구하는 신청인으로서의 기사의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기사의 내용이 형식적으로 보아 그 자체로서는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표현을 하였거나 전후 사정을 소상히 밝히지 않은 채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였거나, 기사 중의 다른 내용과 연관지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표현한 경우 등에는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관련자는 이에 대하여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을 가하거나 전후사정 및 사안의 배경을 첨가하거나 오해의 가능성에 대한 변명을 할 기회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판례도, 민정당 소속으로서 국회예산결산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이 당정예산관계자 간담회에서 전라북도 예산에 대하여 특별대책을 세워달라는 지구당 위원장들에게 「전원야당을 뽑았으니 뜨거운 꼴을 한번 봐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전북도민들은 이를 신청인인 <이규효 전 건설부 장관의 싹쓸이 발언>에 이은 <제 2의 싹쓸이 발언>으로 간주, 개탄하고 있다」는 기사에 대하여, 신청인의 발언은 선거유세장에서의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지역감정을 표출한 김용태 의원의 발언과는 그 취지가 다르다는 내용의 해명적 반론을 허용한 예(서울민사지법 1989. 12. 29.자 89 카 52256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7. 3.자 90 나 4848 판결, 대법원 1991. 1. 15.자 90 다카 25468 판결), 「학사업무,징계업무 등이 합리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부당하게 교장선생님의 전횡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교원들에게 1990년 1월 및 2월의 월급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199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교직수당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보도에 대하여, 그 같은 보도내용이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그릇된 외관이나 인상을 불식시키기 위하여는 학사 징계업무 등이 학교 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합리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봉급 및 교직수당 인상분의 미지금은 국고보조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반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예(서울지법 남부지원 1993. 10. 8.자 92 가합 16462 판결), 방송인터뷰 중간의 대화를 빼버려 신청인의 주장과 다른 취지로 오해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방송내용 중 불완전하여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해명을 위한 반론을 허용한 예(서울지법 남부지원 1993. 12. 20.자 93 카합 1107 판결),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관한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이 특정 병원 건물 및 표지를 방송화면에 보도함으로써 마치 당해 병원이 기사내용 중의 의료사고와 관련이 있는 듯한 오인을 줄 수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인정한 예(서울지법 남부지원 1994. 6. 23.자 94 카합 337 판결), 신청인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의 요지를 발췌 보도하면서 기사 앞부분에서 신청인이 자술서를 통해 안기부의 공작정치에 말려든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고 전제하고, 마치 신청인이 이를 자인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진술서의 취지 및 내용과 다르게 제목을 붙이고 요지를 발췌 게재함으로써 독자들이 신청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자인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의 표현을 한 데 대하여 해명 및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 예(서울민사지법 1993. 12. 6.자 93 카기 3254 판결), 아스콘 공장은 분진, 매연, 소음, 진동 등 다양한 공해물질이 발생하고 특히 연통에서 배출되는 먼지는 주위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에

대하여, 신청인의 아스콘 공장은 골재 분쇄작업을 하지 않고 사일로를 설치하여 가공된 골재를 매입, 사용하며 생산기계를 옥내에 설치함으로써 분진 및 입자상 물질이 외부에 분산되지 않도록 설계된 사정에 비추어 과장보도를 인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같은 사실을 밝혀 해명할 기회를 인정한 예(서울지법 서부지원 1993. 12. 27.자 93 카기 760 판결), 신청인이 장기기증운동본부의 본부장으로서 장기 기증을 받은 자가 장기 제공자에게 준 보조금을 횡령하고 기증을 받을 것을 희망하는 자들로부터 후원금 등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보도에 대하여 일부 잘못 보도된 내용에 대한 수정과 함께 기사내용을 보충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반론지의 게재청구를 허용한 예(서울지법 서부지원 1995.7. 14.자 95 카합 1256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여, 포항종합제철을 비롯한 연관단지에서 배출된 청산가리가 영일만 밑바닥에 10cm 두께로 퇴적하여 거대한 청산가리층을 형성, 무산소층을 형성한 때문에 각종 어패류가 폐사하고 어장과 양식장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와 함께 「포철관계자는 영일만 해저오염에 따른 어민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하여, 포철관계자가 청산가리 배출 등 오염원인제공 사실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신청인 포철측의 반론청구를 원래의 보도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도 있는 바(대구지법 경주지원 1996. 3. 26.자 95 카합 1209 판결), 전체적인 기사의 흐름에 비춰보면 신청인 주장이 무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하여 변명이나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 (라) 고의, 과실의 여부

반론권의 행사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달리 불법행위의 성립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면 족하고, 언론사에게 그와 같은 기사를 게재, 보도한 데에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따라서, 편집마감 시간에 쫓겨 기사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인지 특정인의 인격을 훼손할 의도하에 고의로 보도한 것이 아닌 경우(서울민사지법 1989. 9. 22.자 89 카 28545 판결, 1989. 12. 29.자 89 카 52256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7. 3.자 90 나 4848 판결), 경찰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수사담당 경찰관과 면담하는 등으로 기사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서울민사지법 1993. 11. 15.자 93 카기 3887 결정), 회계장부, 전표 등 관계서류를 조사하고 다수 직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한편 신청인에게 3 차례에 걸쳐 해명기회를 주는 등 기사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서울민사지법 1993. 12. 11.자 93 카기 3786 결정), 취재 기자가 고발인 및 관계 행정관청에 직접 고발의 내용을 알아보는 등으로 기사의 진실성, 정확성 확인을 위해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부산지법 1996. 1. 10.자 95 가합 23258 판결)에도 반론권의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 (마) 기사의 공익성 여부

언론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으로 피해를 가한 경우라도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기사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진실은 아니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위법성을 결하여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지만, 반론권은 이와는 그 성립의 기초를 달리 하므로 기사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거나 그 같은 의도에서 보도되었는지 여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관련자가 전직 건설부장관이고 그 언동이 장관 재직시의 것으로서 공인에 관계된 보도인 경우(서울민사지법 1989. 12. 29.자 89 카 52256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7. 3.자 90 나 4848 판결), 신청인이 인기 연예인으로서 공적인 인물이고 기사 게재 목적이 불법 유학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경우(서울민사지법 1991. 11. 15.자 91 카 65412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8. 20.자 91 나 64670 판결) 등에도 모두 반론이 허용되며, 대법원도 이 점을 명백히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1. 1. 15.자 90 다카 25468 판결).

## (2) 예외 사유가 없을 것

반론권이 당해 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또한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구하지 않는 등으로 비교적 폭넓게 인정된다고 하지만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없음은 모든 자유와 권리에 내재하는 '자기 제약의 원리'<sup>41)</sup>에 비추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간법 등은 구 언론기본법 이래로 피해자의 반론청구가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반론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위법한 내용인 경우 및 국가, 공공기관 등의 공개 회의나 공개 재판절차 등을 사실 그대로 보도한 경우에는 언론사로 하여금 반론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위 규정의 취지는 피해자의 반론보도청구권을 보장하되 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함으로써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언론활동의 마비 내지는 위축을 아울러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6. 12. 23.자 86 다카 818 판결).

그런데 이와 같은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피해자의 반론청구는 배척되게 되는 바, 이는 피고인 언론사가 그 요건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항변사항인가 아니면 원고인 피해자의 반론청구가 적법하기 위한 소극적 요건으로서 언론사가 적극적으로 이를 주장, 입증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이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항인가? 정간법 제 16 조 제 3 항은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언론사는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문리적 내용에 충실하면 항변사유로 보이고, 또 실제로 많은 경우 위와 같은 사유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언론사측에서 주장하고 입증함이 보통이기는 하지만, 정당한 이익의 존부 및 상업적 광고만을 위한 목적의 존부, 반론내용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국가, 공공기관의 공개 회의 등을 그대로 보도한 것인지 여부는 언론사의 적극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이 쉽게 이를 조사, 판단 가능한 것이고, 정당한 이익의 존재 외의 나머지 사유 역시 그 본질상 모두 정당한 이익에 포섭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정당하지 못한 원고의 청구는 소송상 피고의 주장여부에 불구하고 허용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는 항변사유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미 당해 보도내용에 대하여 속보나 정정, 반론보도의 형태로 반론청구로써 구하는 내용의 보도가 이루어진 경우 피고측인 언론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법원으로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유는 '정당한 이익'이라는 주요사실을 구성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당초의 보도 당시 반론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등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이를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소송실무상으로는 이를 어느 쪽으로 파악하든 크게 문제되지는 아니한다. 판례 가운데는 이를 항변사유로 명백히 표시한 사례도 있으나(서울고등법원 1986. 2. 25. 자 85 나 3140 판결), 대개는 이를 명백히 구별하지 않는 대신 언론사측의 주장이 있으면 이를 모두판단하고 그 입증책임을 피고측에 지우고 있다

#### (가)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

이는 원래의 보도에 대하여 반론을 허용하여야 할 필요성 또는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넓게 보면 앞서 이미 살펴본 개별적 관련성 및 피해의 유무문제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42) 여기서는 그 밖의 사정만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① 원래의 보도내용 중 지엽말단적인 사항에 대하여 반론을 구하는 경우우리 법이 사실적 주장의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반론청구를 허용하는 이상 그 반론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 및 반론내용은 신청인의 명예 등 법익에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 핵심적 사항이어야 하고, 그러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단순히 기사내용 줄거리의 한 조각에 불과한 등으로 지엽말단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굳이 반론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신청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으므로 반론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대법원도 이러한 취지에서, 정정보도에 기재된 내용과 원문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반론청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6. 12. 23.자 86 다카 818 판결).

판례에 나타난 구체적 사례를 보면, 신청인에 관련된 기사가 그 분량에 있어 전체 기사의 일부분에 불과하나 신청인이 구하는 반박내용이 기사의 기본 취지에 대한 반론인 이상 지엽말단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예(서울민사지법 1989. 12. 29.자 89 카 52256 판결), 필자가 기고한글의 목적이 종교적, 성서적인 관점에서 신청인교단의 교리 비판에 있음이 그 글이 게재된 잡지의 성격(<목회와 신학>이라는 종교관계 월간지), 이를 게재하게 된 경위, 게재 위치 등에 비추어 명백한 만큼 「구원파 교주인 유명언씨」, 「구원파에서 계획한 수순에 따라 필자는 두번째 조사차 경찰에 출두하였다가 서부경찰서에 수감되었고」, 「유씨는 교인이 운영하던 부실 기계자수 회사 삼우트레이딩을 인수, 교인들의 헌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등의 보도내용은 신청인 교단이 이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지엽적인 언급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인 교단은 유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신청인의 반론을 배척한 예(서울고등법원 1992. 8.21.자 91 라 161 결정), 「범민련 남측본부결성준비위원회 조직소위, 재정소위, 정책소위 등의 소위원회는 사실상 재야 운동권의 친북성향 인사들이 실세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주사파 계열에 의해 장악돼 있는 실정이다」라는 기사에 대하여, 위 재정소위 위원장인 신청인이 자신은

친북성향의 주사파 계열이 아니라는 반론으로써 「무극고등공민학교 국어 교사로 7년 4개월, 대명중학교 교장으로 13년을 근무하는 등 교직에 몸담고 있었고, 제 3공화국 시절부터 군사독재에 저항하여 민주투쟁을 하다가 투옥된 적도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구하고, 또 「범민련은 걸으로는 남북합의서의 이행 등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슬로건을 내걸고 실제로는 반전, 반핵,미군철수 등과 연방제 통일을 위한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소집을 지지하는 등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 「범민련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1 국가 2 체제라고 한다면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1 국가 2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는 반론보도를 구함에 대하여, 이는 신청인의 과거 경력에 관한 내용이거나 북한과 범민련의 노선 중 일부 차이가 있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위 기사 및 정정보도문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한 예(서울민사지법 1992. 11. 26.자 92 카기 649 판결),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 재단 이사장이던 박광수 목사가 그와 마찰을 빚어 왔던 재산수호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성수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요지의 기사 말미에 곁들인 「한편 전 재단 간사 이호운 목사도 같은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됐음이 밝혀졌다」는 기사와 관련, 신청인(이호운 목사)이 위 기사는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기소됨으로 인하여 재단 간사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인이 현재도 재단 간사의 지위에 있다는 내용의 반론을 구함에 대하여, 당초 기사의 주된 취지는 재단 이사장인 박광수 목사가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되었고 신청인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것이므로 신청인 주장의 반론은 기사의 본질적인 핵심에서 벗어난 사소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예(서울민사지법 1993. 9. 8.자 93 카 기 4057 판결), 원문기사와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학생을 가르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측에 불만을 품고 집단적으로 항의 농성한 사실과 그 무렵 학교측에서 그들을 해임하거나 대기발령을 한 사실이 그 본질적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하여는 양자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다만 원문기사 중 일부의 시간강사를 평교사로 표현하고 그들이 사회정화위원회에 찾아가 진정한 사실을 학교측에서는 '모르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진정한 뒤에 학교측이 해임한 것으로 하였다거나, 그 농성기간을 며칠 달리 한 부분들은 본질적인 핵심에서 벗어난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여 올바른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한 예 (대법원 1986. 12. 23.자 86 다카 818 판결) 등이 있다.

결국 어떠한 내용이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원 보도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줄거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의 내용이 그러한 줄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그 시정여부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 ② 이미 반론청구의 목적이 이루어진 경우

굳이 다른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자명한 이치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배척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6. 12. 23.자 86 다카 818 판결, 춘천지법 1983. 2. 29.자 82 카 768 판결, 서울민사지법 1985. 7. 27.자 85 카 20576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 2. 25.자 85 나 3140 판결, 수원지법 1991.11. 20.자 90 카 18577 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2. 2. 20.자 89 카 8917 판결, 1994. 6. 23.자 94 카합 337 결정 등을 들 수

있다.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의 내용이 이미 동일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었으면 족하고 그 형식이 「정정」 이든 「고침」 이든 「속보」 이든 「반론」 이든, 원문기사와 동시에 게재되었든 그 이후에 게재되었든 상관 없다. 다만 정간법 제 16 조 제 5 항은 반론문의 게재는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으나, 그 내용 중에 원래의 기사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반론임을 알 수 있게 하였다면 반론권의 성질상 굳이 이를 금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되므로 일률적으로 이를 부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반론보도는 반드시 당해 언론매체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원래의 보도 이후에 다른 매체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동일한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또 반론보도의 내용, 위치, 크기, 분량, 횡수 등에 있어서 별도의 반론이 불필요할 만큼 충분한 반론이 있어야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여 불충분한 것이 된 때에는 다시 반론을 허용하여야 한다.

판례도, 다른 신문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지의 반박 기사를 게재한 경우(서울민사지법 1987. 12. 11.자 87 카 40175 판결), 속보에서 원래의 보도내용을 특정하여 그 기사가 정확하지 못했다고 정정하여 보도하거나 그 잘못된 부분 전부에 대하여 반대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잘못된 기사를 바로잡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원래의 보도 기사와 일부 상반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을 뿐이어서 기사 전부에 대해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는 경우(서울민사지법 1989. 7. 7.자 89 카 11518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2. 6.자 89 나 30506 판결), 원 보도내용을 특정하여 정정을 하거나 반론을 충분히 게재한 것이 아니라 원 보도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기사의 제목을 바꾸어 보도하거나 원 보도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그 이후의 내용을 보도하는 한편, 또 지면의 위치 및 크기로 보아 원 보도보다 훨씬 비중이 적은 기사로서 신청인 가족들의 항의 내용을 간단히 게재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서울민사지법 1989. 9. 22.자 89 카 28545 판결), 원 보도 이후 게재된 「고침」 기사에 원 보도내용의 일부를 정정하는 내용을 게재하고 있으나 원 기사의 핵심적 내용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기사의 크기 및 배치 등으로 보아 원 보도 기사보다 훨씬 비중이 작으며, 나머지 고침 기사의 내용도 원 보도 기사 내용을 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서울민사지법 1989. 12. 29.자 89 카 46152 판결), 신청인의 해명요구에 따라 해명성 후속 기사를 게재하기는 하였지만 원 보도와 대비하여 볼 때 그 특징이 미흡하고 후속보도의 게재 내용 및 기사의 분량과 위치, 크기 정도로는 원래의 기사 전부에 대한 충분한 정정보도로 볼 수 없는 경우(서울민사지법 1990. 7. 19.자 90 카 41568 판결, 부산지법 1996. 1. 10.자 95 가합 23258 판결), 신청인의 항의를 받고 후속방송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 비난하는 한편, 신청인측의 입장에서 일련의 사태를 보도한 신문의 내용을 시청자로 하여금 읽어 볼 수 없을 정도로 화면으로만 보도한 경우(서울지법 남부지원 1993. 9. 6.자 93 카합 792 판결), 후속보도에서 신청인의 반박내용을 게재하기는 하였지만 그 부제목 자체에 신청인의 해명은 장부상의 기록과 전혀 맞지 않다고 강조하고, 그 본문 중에는 신청인의 반박을 무색케 하는 내용 및 당초의 기사와 동일한 취지의 언론사측 주장이 주류를 이룬 경우(서울민사지법 1993. 12. 11.자 93 카기 3786 결정), 원 보도 당시 신청인측의 주장이 일부 반영되기는 하였으나 그 일부 주장은 잘못 해석될 수 있게 보도된 경우(서울지법 남부지원 1993. 12. 20.자

93 카합 1107 판결), 수정보도를 하기는 하였으나 한자 크기나 수정보도가 게재된 같은 날짜의 신문 사설 내용에 비추어 그 정정보도가 불충분한 경우(제주지법 1994. 6. 16.자 94 카합 27 판결), 속보기사에서 신청인을 지칭하는 원 보도 중의 「진모양」은 그 실명이 이양으로 드러났다는 내용만을 게재하고 신청인이 연예인 술집 접대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보도는 하지 않음으로써 독자로서 하여금 과연 신청인이 접대사건과 관계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인의 이름은 예명으로서 실제 성이 진씨가 아닌 이씨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인지 알 수 없게 한 경우(서울민사지법 1994. 10. 27.자 94 카기 3509 결정)에는 신청인이 반론보도청구를 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보아 다시 반론을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하고 있다.

### ③ 기 타

그밖에 판례에 나타난 사유를 보면, 원래의 보도내용을 잘못 받아들이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으로 원 보도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보도된 바 없는 사실에 대하여 반론을 구하는 경우(서울민사지법 1985. 7. 27.자 85 카 20576 판결, 수원지법 1991. 11. 20.자 90 카 18577 판결, 수원지법 성남지원 1993. 7. 30.자 93 카합 312 판결 43), 서울지법 1995. 2. 20.자 94 카기 5716 결정, 1996.1. 3.자 95 카기 5706 결정,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6. 1. 11.자 94 카합 1017 결정)에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이를 엄격히 처리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표피적으로 보아 원 보도내용 중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원 보도내용이 진실한 사실관계의 전달에 불완전하여 이에 대한 수정, 변경, 보충, 해명 등의 방법으로 반론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의 사례와는 반대로 판례는, 신청인측의 입장에서 다른 신문이 원 보도내용을 반박하는 기사를 게재한 경우(서울민사지법 1987. 12. 11.자 87 카 40175 판결), 신청인이 정부 당국의 허가없이 북한을 방문한 것과 관련하여 『문씨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제목하에 귀국 후 체포 가능성에 대한 기자 질문에 신청인이 솔직히 말해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심경을 피력하였다는 내용의 보도 후에 신청인이 그 기사내용과 달리 귀국을 하였고 그것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서울민사지법 1989. 9. 22.자 89 카 28545 판결), 신청인에게 원 보도내용의 해외유학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과실이나 결과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신청인의 과실점 등을 사실대로 보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허위 내용을 보도하여 그로 인해 신청인에게 더 큰 피해를 준 경우(서울지법 남부지원 1991. 9. 9.자 91 카 7208 판결), 신청인이 사기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중에 있다 하더라도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기소중지 된 상태여서 조만간 그 종국적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워 추후보도청구권을 당장 행사할 수 없는 경우(서울민사지법 1991. 11. 15.자 91 카 65411 판결)에는 반론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신청인측이 원래의 보도 또는 속보 등과 관련하여 언론사측의 취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아니한 사정은 반론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되는가? 생각컨대, 신청인이 명시적으로 반론청구를 거부할 의사로 협조를 하지 아니 하였다면 모르되 신청인이 언론사의 취재에 협조하거나 적극적으로 호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부정할 것이다. 판례도

이러한 취지에서, 신청인이 보도 이후 언론사의 취재활동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서울지법 남부지원 1993. 9. 6.자 93 카합 792 판결), 원 보도 후 양측이 만나 신청인측의 의견을 후속기사에서 공정하게 보도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그 후속기사의 보도내용을 사전에 알려 달라는 신청인의 제의를 언론사가 거부하여 결국 후속보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서울지법 남부지원 1993. 12. 20.자 93 카합 1107 판결)에 이와 같은 사정 만으로는 신청인이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반론보도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하고 있다.

(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지 않을 것

구 언론기본법 이래 현행 법까지 규정되어 온 내용이다. 현행 정간법 이전에는 반론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던데다 법문에서도 그 명칭을 「정정보도청구권」이라 하고 있어 그것이 반론권인지, 조문 그대로 정정보도청구권인지 명백하지 아니하였기 예문에 정정보도청구권으로 이해하는 쪽에서는 위 규정을 그 주장의 주된 논거로 삼았었다. 또 반론권적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도 위의 규정을 근거로 원 보도내용 및 반론보도내용의 진위를 가리기 위하여 세밀한 증거조사를 거쳐 그 결론에 따라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었다. 종래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현행 정간법이 반론권적 성질을 명백히 한 마당에 그렇다면 위 규정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이미 반론권의 성질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반론권은 원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관련 당사자로 하여금 그에 대한 반론이나 반박을 하게 함으로써 독자나 시청자 등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그 대립되는 주장을 자신의 식견과 견해를 토대로 자유로이 판단케 하여 공정한 여론 형성을 기하고, 또 당사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데 그 기본 취지가 있으므로 원래의 보도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6. 1. 28.자 85 다카 1973 판결, 1991. 1. 15.자 90 다카 25468 판결 참조).

그리고, 반론보도의 내용은 원 보도의 사실적 주장과는 대립, 반대되는 사실적 주장일 수밖에 없으므로 반론보도의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 역시 조사 심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반론권의 성질상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나 정보 역시 이른바 정보의 자유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로써 사회 전체적인 면에서 보아 손해가 되는 점도 있을 것이나, 이 같은 손해는 진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생략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관련 당사자의 반론을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나 독자들로 하여금 원래의 보도내용과 관련 당사자의 반론을 비교,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정보시장 스스로의 여과장치에 의해 올바른 여론 형성을 도모함과 함께, 자칫 대립되는 이해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이 보도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방지하며, 수사기관과 같은 사법적 조사권이 없는 언론기관이 언론의 속성의 하나인 신속성의 제약 속에서 대립되는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진실성을 입증하는데 따른 부담을 지지 않게 함으로써 언론 본래의 활동을 아무런 제약 없이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서 얻는 이익으로써 충분히 상쇄되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언론은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직업윤리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진실한 보도를 추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44) 진실하지 못한 정보의 전파는 사회 공익에도 반하므로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어서 누구든지 언론기관에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보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서울지법 남부지원 1993. 9. 6.자 93 카합 792 판결 참조)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반론권의 성질상 진실하지 못한 정보의 전파 역시 어느 정도 용인하지 않을 수 없기는 하지만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정보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정간법 제 16 조 제 3 항 단서의 위 규정은 이러한 취지로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반론청구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란, 첫째 반론청구의 내용이, 널리 사회 일반에 걸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공지의 사실로 되어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 누구라도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서울지법 남부지원 위 93 카합 792 판결).

예를 들자면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 사실, 6. 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에 의하여 발발한 사실, 일본의 한국 병합이 불법적인 강제조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 5. 16 군사혁명과 1980 년의 5. 18 사태가 군부의 비합법적 쿠데타에 해당하는 사실, 원자력 발전이 방사능 폐기물 및 온배수로 인해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사실, 우리 나라의 각종 산업시설이 경인지방과 동남부 해안지방에 집중되어 있는 사실 등과 같이 역사적 검증을 거친 사실이나 자연과학적 사실, 또는 사회적 사실로서 우리의 현 시대에 있어 이론의 여지 없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의 주장을 함은 허용될 수 없다.

둘째, 위와 같이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에까지 이르지 않는 아니하였지만 신청인의 주장 자체로서 서로 모순되는 사실, 법원이 당해 사건이나 다른 사건의 처리를 통해서 지득한 현저한 사실로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사실 45)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신청인이 자신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지지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아내를 폭행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보도에 대하여 신청인이 이를 부인하는 반론을 제기한 경우에 있어 당해 법원이 이미 신청인의 이혼사건을 처리하여 그 이혼의 원인이 보도내용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등에도 법원은 이에 반하는 신청인의 반론주장을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법원 실무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언론사측에 원 보도내용의 진실성 또는 반론보도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우고, 상세한 증거조사를 거쳐 그 진실여부를 판단한 다음 신청인의 청구에 대한 당부를 결정하여왔다.

이같은 법원의 관행은 반론권의 본질이나 법규정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도 기인한 바가 크지만, 우리의 언론계가 이제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제도에 직면하여 나름대로의 대항 수단을 찾으려는 본능적인 반응과, 언론보도에 대한 국민 일반의 무비판적 · 맹목적인 신뢰를 깨뜨림으로써 초래되는 위신이나 권위의 실추를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주장하고 나선 데에 더 큰 이유가 있었던 것임을 숨길 수 없다.46)

그러나 법원의 위와 같은 태도는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법원도 이미 정간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피신청인(언론사)의 보도내용이 반드시 진실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를 판단한 대목이 있으나, 이의대상인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는 정정보도청구권의 요건이 아니므로 위 판시부분은 불필요한 판단이라고 할 것이며, 그 판단에 소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도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라고 판시하여 증거조사 절차가 불필요한 것임을 명백히 하였었다(대법원 1986. 1. 28.자 85 다카 1973 판결).

이에 관한 하급심 판례 중 참고할 만한 것을 살펴보면, 원문기사의 구성 및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한 사례(서울민사지법 1984. 7. 13.자 84 카 17261 판결, 서울고등병원 1985. 1. 18.자 84 나 3255 판결), 신청인이 보도내용과 같이 친북성향의 주사파계열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이 형사재판에서 이적단체 구성 및 반국가단체(북한)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회합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에 비추어 47) 그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한 사례(서울민사지법 1992. 11. 26.자 92 카기 1649 판결), 신청인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며 당국의 전향요구에 불응한 것은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남로당에 가입한 것은 해방 후 친일파들이 오히려 득세하는 것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이 전향을 거부한 골수 공산주의자라는 기사에 대한 반론을 청구함에 대하여, 그 주장은 신청인 스스로 자신이 남로당원으로 6. 25 당시 인민군 병사로 철원지구를 정찰하다 포로가 되어 간첩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복역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전향을 거부하였고, 가석방 직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사실 등과 일반적인 교양을 갖춘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명백히 배치된다고 본 사례(서울고등병원 1996. 3. 14.자 95 라 216 결정) 등이 있다.

(다)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반론권의 본질 및 인정 근거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반론권은 언론보도로 인한 관련 당사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 및 공정한 여론 형성을 위하여 언론사의 희생을 무릅쓰고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므로, 영리 추구를 위해 상업적 광고만을 위한 목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경우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정간법 제 16 조 제 3 항 단서)그러나 이 규정을 반론권에 의하여 인격적 법익만을 보호하고 재산적 법익에 대하여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즉, 원래의 보도에 의하여 재산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그와 인과관계에 있는 원 보도 중의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론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허용하되, 그 범위를 넘어서서 원래의 보도에서 주장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대한 반론적 주장이나, 원래의 주장을 수정, 보충, 해명, 변명함으로써 피해를 회복함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반론적 주장까지 허용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한계 내에서라면 비록 반론주장이 상업적 내용을 띤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구제의 목적이 아닌 상업적 광고만을 위한 것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당연히 허용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위의 한계는 원 보도의 내용, 그것이 게재·방송된 매체의 성격, 피해 법익의 종류 및 성질, 피해의 정도와 관련 당사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피해자의 반론청구는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한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고 신청인 자신의 개인적 변명이나 해명을 광고하려는 처사이므로 부당하다는 언론사측의 주장에 대하여, 원 보도의 내용(재산적 법익 침해의 사안이 아니다) 및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청구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반론청구는 그 자신의 반론권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인정되고 단순히 개인적 변명이나 해명을 광고하려는 의사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론사측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서울고등법원 1990. 7. 3.자 90 나 4848 판결)와 파스퇴르유업(주)의 엔토로 요구르트라는 신제품 광고 중의 「임상연구결과 유해 콜레스테롤이 11.96%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식품위생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강원도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아울러 광고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도 확인하라고 시달렸다는 보도가 있자, 파스퇴르유업(주)가, 보건복지부는 위 광고를 법규위반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 위반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하였을 뿐이라며 반론을 요구함에 대하여, 파스퇴르유업(주)는 자사 제품과 경쟁회사의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교묘한 표현을 사용하여 분쟁을 야기하고 그러한 분쟁사실 자체가 보도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존재와 상품에 대한 광고효과를 거두는 등 교묘한 광고수법을 쓰고 있는 바, 이 사건 정정보도신청은 이와 같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언론사측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서울지법 1996. 1. 3.자 95 카기 5706 결정)가 보이고,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반론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위의 두 사례 중 앞의 것은 원래의 보도내용이 상업적인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반론주장의 내용도 이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신청인 자신의 개인적 변명이나 해명을 광고하려는 것이라는 언론사의 주장은 벌써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위법하지 않을 것

반론권의 행사 역시 적법하여야 하고, 그래서 다른 법률, 예컨대 국가보안법이나 형법, 미성년자보호법, 국가기밀보호법 등에 위반하여 범죄행위를 선동하거나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훼손 기타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될 것임은 정간법 제 16 조 제 4 항의규정에 불구하고 당연하다 할 것이다. 다만 특정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표명한 반박문의 내용 즉, 원 보도기사와 반박보도 내용에서 언급된 상대방에 대한 사실적 주장이 그 자체로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이는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일 뿐 아니라 사회상규에도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므로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신청인이 모씨를 속여서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으나 오히려 신청인이 사기를 당하였다면,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해 신청인이 모씨를 속인 것이 아니라 그가 신청인을 속인 것이라고 반박하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마) 국가·공공단체의 공개 회의나 법원의 공개 재판절차를 사실대로 보도한 것이 아닐 것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 회의나 법원의 공개 재판절차에 관한 사실기사에 대하여는 반론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독일, 오스트리아의 입법례를 따른 것으로서 구 언론기본법부터 인정된 것이다. 그 입법취지는, 원래 이들 기관의 공개 회의나 공개 재판절차에서는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의 교환과 충분한 반론, 반박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별도로 관련 당사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적고, 이들 회의나 재판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면책특권이 인정되어 타인의 명예나 기타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발언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언론도 이를 사실 그대로 보도한 이상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함이 공평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공단체의 범위다.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단체의 예시에 불과한 바, 일반적으로 공공단체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국가로부터 그 존립 목적이 부여된 법인을 말하며 48) 입법적으로 그 의미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49) 대체로 그 존립과 유지에 공익 목적이 개재되어 있기는 하나 변호사회, 의사회, 공인중개사회등과 같이 오로지 공익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도 많다.

공공단체를 유형별로 예시하면 전형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사단법인으로서 변호사회, 의사회, 상공회의소, 농지개량조합, 산림조합, 합의제형 독립규제위원회로서 방송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금융통화운영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공법상의 재단법인으로서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은행, 한국토지공사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공공단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데다, 국회나 지방의회 등과 같이 엄격한 절차에 따라 소집되고 그 회의에서 반대 당사자의 활발한 반론이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면책특권이나 언론에 의한 활발한 감시 등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다른 사적 단체와 뚜렷이 그 공공성이나 공정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공공단체 모두를 그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입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공공단체의 회의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외부에 공개되어 공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국가 공공단체의 공개 회의나 법원의 공개 재판절차를 보도한 것이라도 그것을 사실 그대로 가감 없이 보도하지 않고 언론사 스스로 지득한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경우(대법원 1986. 1. 28.자 85 다카 1973 판결), 검찰수사 및 법원의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 제출하여 기록에 첨부된 진술서를 기자가 열람하여 그 내용을 요약 보도한 경우(서울민사지법 1993. 12. 6.자 93 카기 3254 판결), 회의나 재판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언론사가 임의로 수정, 첨가, 보충한 사항 등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면책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3) 추후보도청구권의 경우

#### (가) 의의 및 성질

정간법 제 20 조는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형사절차가 종결된 경우에 그 사실의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추후보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원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 헌법 제 27 조 제 4 항이 명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범죄혐의를 받아 입건 또는 기소가 되었다고 하여 그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처우해서는 안되며, 또 언론 역시 이런 취지에서 범죄사건의 보도에 신중을 기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언론은 대개 범죄혐의가 있다고 형사상 입건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객관적인 공소사실의 보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경쟁적으로 혐의자의 주변인물 및 당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까지 낱낱히 밝혀 마치 유죄가 이미 확정된 듯이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와 같은 보도가 있게 되면 관련당사자는 사회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리하여 과연 유죄판결의 확정이 있기 전에 범죄혐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또는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실정이고,50) 그 입법취지가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형법 제 126 조도 범죄수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로 하여금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피의사실의 공표를 금하고 있다.

반면에 범죄사건의 보도는 공중의 관심사항인 당해 범죄사건의 전미를 밝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일방, 범인 체포나 새로운 범죄의 예방 등 공익에 부합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쪽으로 이해되고 있지만,51) 그로부터 파생되는 개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역시 강구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종래 그러한 수단으로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및 언론기본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돼왔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 그 동안의 정정보도청구의 실태를 보면, 언론사쪽에서는 무죄나 무혐의 사실이 종국적으로 밝혀지기 전에는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고, 손해배상 등 민사상의 책임추궁도 이른바 '공익을 위한 보도'의 면책조항 때문에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1987. 11. 28. 정간법과 방송법을 제정할 때에 오스트리아의 언론법을 본받아 추후보도청구권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렇지만 추후보도청구권은 범죄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반론권 행사를 보다 용이하게 인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본질에 있어서는 반론보도청구권 일반과 그 행사시기만 다를 뿐 그밖에는 전혀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과 같이 추후보도청구권의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당사자는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확정 이후에도 양자를 자유로이 선택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판례도, 신청인이 사기혐의로 입건되어 수사중에 있다 하더라도 참고인이 소재불명되어 사건이 기소중지된 상태여서 조만간 그 종국적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신청인이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대신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데에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민사지법 1991. 11. 15.자 91 카 65411 판결).

#### (나) 행사의 요건

먼저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어야 한다. 범죄혐의의 보도는 사건관계인의 고소, 고발, 진정, 민원, 수사기관의 내사, 입건, 소환, 수배, 기소 등에 의해 이를 보도한 경우는 물론 언론사 스스로 취재 보도한 경우 등 보도의 동기나 계기를 묻지 아니한다. 형사상의 조치는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사법경찰관직무집행법 등 형사법에 규정이 있거나 기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직무상 관행에 따른 내사, 입건, 수배, 소환, 구속영장의 신청 및 발부, 기소, 재판, 형의 집행 등의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다만 민사상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과태료처분, 행정상의 강제집행이나 징계처분 등은 형사상의 조치가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는 당해 보도 후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사건이 종결되어야 한다. 여기서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에 의한 종결이란 사실상 범죄혐의가 없음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고 볼 것이므로, 경찰의 무혐의 내사종결이나 검찰의 무혐의처분, 법원의 무죄 판결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처분에는 법원의 재판과 달리 일사불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확정이란 있을 수 없으나, 그 내부 절차상의 불복절차 등이 종료된 경우 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형사절차의 종결 전에 당사자가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그 청구는 형식적으로는 이유 없으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본질상 반론보도청구권에 다름이 아니므로 법원은 그 청구권 원을 반론보도청구권으로 바꾸도록 유도하거나 그 주장을 선해해서 가능하면 피해자를 구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밖에 추후보도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이를 언론사에 먼저 청구할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종결된 후 1 월 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모두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와 동일하므로 정간법 등은 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2. 절차적 요건

### 가. 전치절차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거쳐야만 한다(정간법 제 19 조 제 1 항). 언론중재위원회는 정간법에 의해 설치된 일종의 독립규제위원회로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공보처장관이 위촉한 40 인 이상 8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위원 중 5 분의 2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된다.<sup>52)</sup>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나 언론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가 언론사에 대한 반론청구 없이 곧 바로 중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 월, 있는 날로부터 6 월 내에,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에 반론청구를 한 때에는 그 혐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 일 내에 중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중재신청에 앞서 언론사측에 먼저 반론청구를 하느냐 여부는 그의 자유 선택에 달려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중재신청을 하더라도 적법하다(서울민사지법 1982. 11.4.자 82 카 27454 판결, 춘천지법 1983. 2. 9.자 82 카 768 판결 참조).

중재는 5 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 53)에 서하며, 그 법적 성질은 조문상의 표현과 달리 중재가 아니라 조정이다(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8. 31.자 95 카합 2283 판결 참조). 언론사가 2 회에 걸쳐 중재기일에 불출석한 때에는 신청인의 중재신청에 따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진 때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개정 정간법은 중재기능의 활성화를 취하여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중재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 때에는 이에 대하여도 위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중재위원회는 위의 경우와 중재신청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는 경우 및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하는 경우 외에는 중재불성립 결정을 하게 되며, 각하·기각결정 및 중재불성립 결정의 경우에 피해자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sup>54)</sup>

중재전치절차를 거쳤느냐 여부는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는 중재절차에서는 구하지 아니하였던 사항(원 보도내용 중의 사실적 주장)에 게 하여도 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단체와 그 대표자 또는 구성원과의 관계에서와 같이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경우에까지 이를 엄격히 적용하여야 할 것인가는 문제이다. 생각컨대 이 문제는, 중재절차는 법원에 대한제소에 앞서 신속, 저렴한 절차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들의 경우 어느 일방이 중재를 거쳤으면 사실상 다른 일방에 대하여도 이를 거친 것이나 다름없고, 또 별도로 이를 거치게 하더라도 대개의 경우 불성립 등으로 결말이 날 것이므로 무용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되어 피해자측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하고 가혹하므로 동종사건 또는 내용상 서로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완화한 행정소송법 제 18 조 제 3 항 제 1,2 호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만이 이를 거쳤으면 충분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개정 정간법에 의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민법 제 764 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한 분쟁도 중재 할 수 있으나(정간법 제 18 조 제 1 항)55), 이는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중재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에 민법상의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정간법 제 19 조 제 2 항). 입법적으로는 양자를 통합하여 그 행사기간 및 전치절차 등을 동일하게 규율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제소기간 및 관할 법원

법원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의 소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불성립 결정 또는 직권 중재결정에 대한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간법에는 중재신청의 기각·각하 결정이 있을 경우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경우에도 이 같은 결정을 안 날로부터 14 일 내에 제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규칙 제 2 조 제 3 항 및 서울민사지법 1990. 9. 25.자 90 카 60650 판결 참조). 위 기간의 성질은 민사소송법 일반의 제소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 157 조 내지 제 160 조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은 물론이다.

반론보도청구사건의 제 1 심은 피고인 언론사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즉, 본점 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그 주소)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그러나 법문상 전속관할이라는 규정이 없고, 또 이를 전속관할로 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으므로 토지관할이나 사물관할 모두 임의관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3. 행사의 내용

#### 가. 반론보도문의 형식

반론보도문은 그것이 원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게 하는 독자투고의 형식으로 게재·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정간법 제 16 조 제 5 항 참조). 그리고 반론보도문은 그것이 반론권으로서 신청인인 피해자가 언론사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주장, 진술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반론자인 신청인이어야 하고 언론사일 수는 없다. 반면에 정정권의 경우에는 그 주장, 진술의 주체는 언론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1996.8. 13.자 95 나 38815 판결 참조).따라서 반론권의 본질에 비추어 반론보도문의 제목은 「반론문」 또는 「반론보도문」, 그 내용은 원 보도에서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박이어야 하고 그 반박 진술의 주체는 신청인이어야 올바른 것이다.

그런데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래 법원의 소송실무에서는 반론권의 성질을 잘못 이해하여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종래의 법조문에 충실하게 「정정보도문」으로 하고, 그 진술의 주체는 신청인으로 함이 일반적이었다(서울민사지법 1982. 9. 3.자 82 카 18633 판결 56), 1987. 12. 11.자 87 카 40175 판결, 1993. 12. 6.자 93 카기 3254 결정, 서울고등법원 1983. 11. 17.자 82 나 4188 판결)반론권에 관한 판례 가운데는, 그 제목을 「정정보도문」이라 하고 그 내용 역시 정정의 형식으로 하면서 그 주장 진술의 주체를 언론사로 한 것도 있고(서울민사지법 1990. 12. 7.자 90 카 74637 판결, 수원지법 1993. 4. 20.자 92 가합 9602 판결, 1996. 2. 23.자 95 카합 5782 결정, 서울지법남부지원 1994. 6. 23.자 94 카합 337 판결, 1994. 10. 31.자 94 카합 1029 결정, 1994. 11. 29.자 94 카합 1797 결정 57), 1995. 8. 31.자 95 카합 2283 판결,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2. 8. 18.자 92 카 1386 결정), 그 제목을 반론권의 본질에 맞게 「반론문」 또는 「...보도에 대한 반론」 형식으로 한 것 58)도 있으며(서울지법 남부지원 1993. 9. 6.자 93 카합 792 판결, 1993. 10. 8.자 92 가합 16462 판결, 1996. 5. 9.자 95 카합 4287 결정, 서울민사지법 1995. 2. 20.자 94 카기 5716 결정 59)), 심지어는 그제목은 「정정보도문」으로, 진술의 주체는 신청인으로 하면서도 60) 그 내용은 정정의 형식으로 한 것(서울지법 서부지원 1993. 12. 27.자 93 카기 760 판결, 제주지법 1994. 6. 16.자 94 카합 27 판결, 서울민사지법 1994. 10. 27.자 94 카기 3509 결정, 대구지법 경주지원 1996. 3. 6.자 95 카합 1209 판결)도 있다.

한편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전제로 한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판례를 보면, 그 제목을 「정정보도문」, 정정 진술의 주체는 언론사, 내용은 정정으로 하여 그 법적 성질에 합당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서울지법 서부지원 1996. 1. 26.자 94 가합 5021 판결, 서울지법 1996. 8. 22.자 94 가합 98592 판결).

#### 나. 반론보도문의 내용

반론보도문의 내용은 정간법 제 16 조 제 4 항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 보도내용 중의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박적 사실의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설명에 한해 허용된다. 반론권의 성질상 반박이나 반론적 내용에 한정되고 원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그 한도를 넘어 정정보도까지 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개정된 정간법 등에서는 그 용어까지 오해가 없도록 반론보도청구권 및 반론보도문으로 개정한 바 있으므로 앞으로는 종래와 같은 일견 모순적인 내용의 재판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반론보도청구소송절차 하에서는 원 보도내용이나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에 대한 진실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증거조사 결과 원 보도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반박을 넘어 정정보도까지 허용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8. 31.자 95 카합 2283 판결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1996. 8. 13.자 95 나 38815 판결은 "언론보도에 대하여 시정을 구하는 권리는

이를 정정권과 반론권으로 나눌 수 있고, 양자의 차이점은 정정권이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그 정정을 구하는 것임에 대하여, 반론권은 진실여부에 관계 없이 그와 대립하는 주장의 게재를 요구하는 것인 바, 정간법은 원 보도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반론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반론권에 불과하다는 의미는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허위여 부임을 가릴 필요 없이 반박문을 게재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 일응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지, 심리과정에서 원 보도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에까지 정정을 명할 수 없게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되는바, 이는 우리 법제가 법문의 제명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청구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 규정에 비추어 이는 단순한 반론 내지 반박이라기보다는 정정보도에 가까운 반론권으로서, 물론 이 경우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것은 특별한 조사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알 수 있는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사실상 이를 위하여 증거조사가 행하여진 경우 그 현출된 증거에 의하면 원 보도내용이 사실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필요한 경우 반론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정을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이를 긍정한다.

우선 이 문제는 정정보도청구권(정정권)은 반드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으로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에 연관되어 있다. 본고 II. 2. 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는 그 선택에 따라서 정정이나 반론을 구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현행 정간법이나 방송법 등의 규정상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을 전제로 하지 않는 반론권의 내용 속에 정정권을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앞서의 판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정권이나 반론권(반박권) 모두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원상회복적 구제 수단임에는 다름이 없지만, 그 내용에 있어 정정권은 원 보도 내용을 취소시키는 것임에 반해 반론권(반박권)은 원 보도내용을 그대로 유지시킨 채 이와 상반되어 양립불가능한 주장을 보도하는 것임에 그침으로써, 정정권은 근원적인 원상회복이 가능하지만 반론권(반박권)은 독자나 시청자로 하여금 상반되는 양 주장을 그 자신의 양심에 의해 판단하도록 하여 근원적인 원상회복까지 꾀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특성상, 정정권의 경우에는 언론사가 보도한 원래의 사실적 주장을 언론사의 의사에 불구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취소함으로써 우리 민법 제 764 조가 예정하고 있는 바와 동일한 일종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것에 다름 아니지만, 반론권(반박권)의 경우에는 언론사로 하여금 단순히 원 보도내용과 상반되는 반박 주장을 무료로 게재·방송할 의무를 부과함에 그칠 뿐 그 주장을 취소하는 정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양자의 차이점으로부터 반론권(반박)의 경우에는 일종의 간이 재판절차로서 민사소송법상 본래의 본안소송절차와는 다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정간법 제 19 조 제 3 항), 그 권리의 행사요건도 본안소송절차에서와 같은 엄격한 증거조사 등의 심리를 거치지 않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단순히 사실적 주장의 보도가 있고, 그 보도로 인하여 그에 관련된 특정인이 사회 통념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인정되며, 그 반박 주장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등의

사유가 없어 그 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기만 하면 족하므로 이러한 간이한 재판절차에 의한 법원의 명령이 시인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시각에서, "개정 전 정간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보도된 사실적 내용에 대하여 반박의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정한 여론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인정된 것이고, 정정보도 청구권은 그 법문상의 표현과는 달리 반박권의 성질을 갖고 청구인의 이름으로 게재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도내용의 진위를 가리지 아니한 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는 현행 법제 아래 에서 만약 그 표현대로 언론보도의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다는 정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경우 보도의 자유와 편집, 편성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될 수 있는 위험도 피하고 있으며, 보도내용의 진위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데다 그 행사요건도 비교적 형식적인 사유에 기한 제한적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하도록 완화되어 있고, 그 예외 사유도 법의 문언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판단이 가능한 것들이므로 반론권을 인정 하는 한, 그 심리를 위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민사소송법에 정한 본안절차에 따르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처분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이 제도의 본질에도 적합하다고 할 것이므로, 가처분절차에 따라 심판한다 하여 그 절차가 부당하게 간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재판청구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1. 9. 16.자 89 헌마 165 결정).

따라서 앞서 지적한 점과 위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종합하면, 우선 본안소송절차에서와 같은 변론절차를 통한 보도내용의 진위여부를 조사함이 없이는 정정을 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변론에 갈음하여 단순한 소명만에 의하거나 당사자 쌍방에 대한 심문만으로써 정정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sup>61)</sup> 다음에 반론보도청구소송절차에서 변론을 거쳐 원 보도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 심리를 거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요건인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여부를 심리하지 않거나 또는 심리를 한 결과 그 같은 요건이 결여된 때에도 정정을 명할 수 있을 것인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정은 언론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본질상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 내지는 제약이 되는 만큼 과실책임의 대원칙상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함이 타당하고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오늘날 대규모의 매스컴에 의하여 방대하고도 광범위한 정보의 전파가 거의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매스컴의 취재·보도의 자유로서의 언론의 자유는 극대로 보장되고 있음에 반해 그 정보 수령자로서의 일반 국민들이 누리는 언론의 자유는 형해화되어 가고 있는 사정 및 그 비진실성이 검증된 정보의 전파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가능한 한 제한되어야 하는 점, 진실하지 못한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구제 수단으로서의 정정을 금전배상과 같은 민사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반드시 전제로 하여야만 할 이유나 필요는 없는 점<sup>62)</sup>, 그 같은 정정을 명하더라도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나 본질적인 제약은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허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제상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다. 즉, 정간법에 의하면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제 19 조 제 1 항), 중재신청이나 법원의 제소에는 일정한 시간적 제약이 가해진다(제 18 조 제 1 항, 제 19 조 제 1 항).

따라서 반론보도청구의 소가 중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그 기간을 초과하여 제기된 때에는 각하를 면할 수 없다.

그런데 개정 정간법은 민법 제 764 조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는 중재전치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제 19 조 제 2 항), 그럼에도 피해자나 언론사가 민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중재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도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 18 조 제 1 항).

이 규정은 종래 민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과 정간법이나 방송법 등의 반론권 간에 경계가 명확치 못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개정법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아무튼 위법 규정에 따르면, 민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에는 정간법상의 권리행사 기간의 적용 대신에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시효기간이 적용되고, 또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칠 필요도 없으며, 그 소송절차도 일반의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심리되게 된다. 이와 같이 양자 간에 그 요건 및 소송절차 등이 판이하게 다르므로 당사자는 소 제기시에 그 청구의 권원이 민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인지 정간법 등에 의한 반론보도청구권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sup>63)</sup>

그리하여 민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정간법이나 방송법에 의한 반론권 행사의 요건을 아울러 갖춘 때에는 어느 쪽으로 권리를 행사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민법상의 요건만을 갖추었을 뿐 반론권의 요건(중재전치, 제소기간)을 갖추지 못하였으면서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설사 원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할지라도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법원이 소를 각하하지 않고 증거조사를 거쳐 원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밝힌 다음 반론권이 아닌 민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정정을 명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소송실무상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sup>64)</sup>

따라서, 결국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정정이든 반론이든 그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는 중재전치요건 및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그 소가 적법성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그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원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하여 정정이 받아들여 지는 경우는 있을 수 없으며, 오직 민법상의 요건 및 정간법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정정보도청구의 소가 아닌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통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만이 문제로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현행 법체계상 순수한 정정보도청구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은 그 행사요건 및 절차가 다르고, 개정 정간법과 방송법 등이 그 성질을 반론권으로 개정하여 민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과의 구별을 분명히 한 이상 굳이 반론이 아닌 정정까지 구하려는 피해자는 처음부터 민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족하고 반론권에 관한 정간법상의 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반론보도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설사 원 보도내용의 허위성이 입증된 경우라도 법원은 고의, 과실 및 위법성에 대한 판단여부에 불구하고 반론이 아닌 정정을 명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다만, 입법론으로서는 보도내용이 허위인 때에는 언론사에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이 없는 경우는 물론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도 반론을 넘어 정정까지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sup>65)</sup>

대부분의 판례 역시 원 보도내용의 진실여부에 대한 증거조사를 거쳐 그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도, 개정전 정간법 소정의 정정보도는 문제된 보도에 대한 피해자의 반박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그 기사 내용이 진실에 반함을 시인하는 취지의 정정이나 사죄, 명예훼손사실의 시인, 원 보도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의 보도를 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서울민사지법 1989. 12. 29.자 89 카 46152 판결, 1990. 5. 25.자 89 카 28984 판결, 1990. 10. 10.자 91 카 81540 판결, 1991. 11. 15.자 91 카 65411 판결, 1993. 12. 6.자 93 카기 3254 판결, 1994. 10. 27.자 94 카기 3509 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1. 9. 9.자 91 카 7208 판결, 수원지법 성남지원 1993. 7. 30.자 93 카합 312 판결, 대구지법 경주지원 1996. 3. 26.자 95 카합 1209 판결 66)).

한편 법원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내용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이를 재량에 따라 반론의 목적 달성에 가장 적절하고도 최소한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그 게재, 방송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구하는 것보다 양적·질적으로 더 적게 이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청구를 기각함이 실무관행이다(서울민사지법 1989. 1. 13.자 88 카 43429 판결, 1989. 12. 29.자 89 카 46152 판결, 1990. 5. 25.자 89 카 28984 판결), 또한 상소심 법원도 하급심이 명한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직권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서울고등법원 1983. 11. 17.자 82 나 4188 판결, 1985. 8. 16.자 84 나 2524 판결, 1990. 2. 6.자 89 나 30506 판결 등).

#### 다. 반론보도문의 크기, 위치, 횡수 등

정간법은 이에 대하여 반론보도문의 자수는 이의대상이 된 원 보도내용의 그것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고(제 16 조 제 5 항), 방송법 및 종합유선방송법은 동일한 주파수 또는 채널 및 시간대에 의하여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방송법 제 41 조 제 6 항, 종합유선방송법 제 45 조 제 6 항). 이는 원 보도문과 반론보도문 사이에 균형을 요구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반론보도문의 크기나 그 게재·방송의 위치, 시간대, 주파수, 채널, 활자의 크기, 기사의 형태와 배치, 방송의 경우 문자와 화면의 처리, 사진의 삽입여부, 보도의 횡수 등은 원칙적으로 원 보도문의 그것과 균형을 이루는 범위내에서 반론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방법으로 법원의 재량에 따라 인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양자가 엄격히 일치할 필요는 없다. 판례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대개 반론보도문의 게재 위치를 원 보도문이 게재되었던 위치로 하고(서울민사지법 1986. 9. 26.자 86 카 28755 판결, 1989. 1. 13.자 88 카 39283 판결, 서울지법서부지원 1993. 12. 27.자 93 카기 760 판결, 부산지법 1996. 1. 10.자 95 가합 23258 판결), 67) 잡지의 경우 원 보도문의 게재 사실을 그 표지나 목차에 게재, 안내한 경우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사실도 그와 동일하게 표지 및 목차에 게재할 것을 명하고 있다(서울민사지법 1986. 9. 26.자 86 카 28755 판결). 또 기사의 크기와 형태, 배치 등도 원 보도문의 그것과 동일하게 가로·세로의 길이, 단수, 테두리(박스)의 유무, 제목과 본문의 활자 크기와 글자체, 그 배치, 방송시간대 및 그 위치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지정하고 있고(서울민사지법 1990. 7. 19.자 90 카 41568 판결, 1990.

11. 30.자 90 카 68698 판결, 제주지법 1994. 6. 16.자 94 카합 27 판결, 인천지법 1994. 10. 31.자 94 카합 2152 판결, 서울지법 1996. 1. 3.자 95 카기 5706 결정, 부산지법 1996. 1. 10.자 95 가합 23258 판결), 원보도문에 사진이 게재된 경우에는 그 사진도 게재할 것을 명하고 있다(서울지법 남부지원 1991.9. 9.자 91 카 7208 판결, 서울민사지법 1991. 11. 15.자 91 카 65412 판결, 1993. 12. 6.자 93 카기 3254 판결).

방송의 경우에는 자막만으로 처리하거나 자막과 그 낭독을 동시에 명하기도 한다(서울지법 남부지원 1993. 12. 20.자 93 카합 1107 판결, 1994.6. 23.자 94 카합 337 결정, 1994. 10. 31.자 94 카합 1029 결정, 1996. 5. 9.자 95 카합 4287 결정). 한편 반론보도는 원 보도가 있었던 당해 언론매체에 의하여 무료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당해 매체 외에 다른 매체에 이를 게재·방송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서울지법 서부지원 1993. 12.27.자 93 카기 760 판결) 반론보도문의 게재 · 방송 횟수는 대체로 1 회에 한해 인정함이 원칙이나 반론 목적 달성을 위하여 프로그램 방영 전후에 걸쳐 방송을 명하거나(서울지법 남부지원 1993. 10. 8.자 92 가합 16462 판결), 원래의 보도가 10 일 간에 걸쳐 총 16 회나 이루어진 경우에 반론보도문도 원래의 보도에 대응하여 10 회에 걸쳐 게재할 것을 명한 경우도 있다(서울지법 서부지원 1995. 7. 14.자 95 카합 1256 판결 68)).

#### 라. 반론보도와 관련한 언론사의 의견표명

반론보도문은 신청인의 이름으로 게재 · 방송하는 것이므로 원래의 보도기사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이에 영향을 미쳐 일반 독자나 시청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언론사가 신청인의 반론문을 게재·방송함에 있어 원 보도기사의 진실성을 확신하는 등으로 이를 유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대한 나름의 의견이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서울민사지법 1993. 11. 15.자 93 카기 3887 결정). 다만, 그 내용은 원래의 보도내용의 범위 내에서, 원래의 기사가 나름의 근거를 갖는 진실한 것이고 그 반면에 신청인의 반론내용은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설명, 주장하는 데에 그쳐야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내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다시 이에 대하여 신청인의 반론이 허용될 수밖에 없다. 언론사의 의견표명은 반론보도문의 게재·방송과 동일한 지면이나 시간대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반론보도문과는 구별하여야 하고 이에 포함시켜 서로 구분이 안되게 하거나 반론보도의 취지를 흐리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서울민사지법 1993. 12. 11.자 93 카기 3785 결정 참조).

이같은 의견표명은 언론사의 자유이므로 굳이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특별히 반론보도를 명하는 재판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는 판례도 있다(제주지법 1994. 6. 16.자 94 카합 27 판결).

### IV. 법원의 심리와 재판 및 집행

#### 1. 법원의 심리

반론보도청구소송은 신속한 심리를 위하여 보전소송절차인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심리한다(정간법 제 19 조 제 4 항). 그러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민사상 본업소송에 속한다.

따라서 보전의 필요성(민소법 제 697 조)이나 따로 본안소송(민소법 제 705 조)은 불필요하다(정간법 제 19 조 제 4 항 단서). 대개는 당해 법원의 가압류·가처분신청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처리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재판부가 처리하기도 한다(수원지법 1993. 4. 20.자 92 가합 9602 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3. 10. 8.자 92 가합 16462 판결, 부산지법 1996. 1. 10.자 95 가합 23258 판결).

일반의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변론을 열어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입증도 소명보다는 강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지만 가처분절차의 경우에는 변론을 열 것인지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민소법 제 701 조), 그 입증도 서류나 재정증인의 증언 등 소명으로 충분하다(민소법 제 699 조 제 2 항). 종전의 소송실무상으로는 대체로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재판이 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지 않고 결정으로써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였으며(서울지법 남부지원 1989. 11. 7.자 89 카 5999 결정, 1994. 10. 31.자 94 카합 1029 결정,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0. 2. 20.자 89 카 1188 결정, 서울민사지법 1990. 10. 10.자 91 카 81540 결정, 수원지법 1996. 2. 9.자 95 카합 3979 결정), 1996. 6. 27. 개정 전의 대법원규칙은 변론을 열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 쌍방을 심문하도록 하였다(규칙 제 6 조 제 2 항). 그러나 개정 정간법 제 19 조의 제 1 항은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로써만 불복할 수 있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재판은 변론을 열어 판결로써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정된 대법원규칙 제 3 조제 1 항은 불적법 각하의 경우 외에는 반드시 변론을 열도록 하고 있으므로, 1996. 7. 1. 이후부터는 각하의 경우 외에는 반드시 변론을 열어 심리하여야 하게 되었다.

한편 반론보도청구소송은 재산권상의 소가 아니므로 금전 공탁에 의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없고, 또 그 재판에 해방금액을 정할 수도 없다(대법원규칙 제 4 조 제 4 항, 민소법 제 700 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제 702 조). 가처분은 본래 그 신청 즉시 심리를 개시함이 보통이지만 대법원규칙은 신청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제 3 조 제 3 항), 제 1 심 판결은 신청 접수 후 3 월 내에 하도록 하고 있다(제 4 조 제 1 항).

한편 앞서도 잠시 언급한 바 있지만, 반론보도청구소송은 그 요건 및 소송절차가 다르므로 여기에 민법 제 764 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을 병합할 수 없고, 반론보도청구를 위와 같은 청구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서울민사지법 1984. 11. 30.자 84 카 34374 판결 69) 참조). 개정된 대법원규칙은 이를 명정하고 있다(제 2 조 제 4 항)

## 2. 재 판

### 가. 재판의 형식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제소기간을 통과한 등으로 소가 부적법하여 그 흥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는 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결정으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민소법 제 205 조제 1 항, 대법원규칙 제 3 조 제 2 항, 서울민사지법 1990. 9. 25.자 90 카 60650 결정). 소가 적법하다고 보아 변론을 열어 심리한 결과 신청인(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는 기각의 재판을 하고, 그 청구가 이유 있을 때는 인용의 재판을 하여 언론사에게 반론보도문의 게재나 방송을 명하게 되는 것은 민사재판 일반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 재판의 형식은 변론을 연 때에는 판결로,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 및 당사자 심문만을 거친 때에는 결정으로써 하게 되나(민소법 제 701 조), 개정 정간법 및 대법원규칙 하에서는 판결만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청인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반론보도문의 내용을 질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인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청구 기각의 주문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함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 나. 가집행선고의 여부

결정으로 된 재판은 그 고지와 동시에 당연히 집행력이 발생하므로(민소법 제 519 조 제 1 호)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결정은 상대방의 항고 제기 등 불복여부에 불구하고 즉시 집행이 가능하며 따라서 가집행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한편 판결로 된 재판은 확정되거나 그 확정 전이면 가집행선고가 있어야만 집행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민소법 제 469 조, 제 519 조 제 2 호), 가처분재판의 경우에는 그 선고와 동시에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민소법 제 708 조 제 1 항), 판결로써 반론보도를 명하는 때에도 가집행선고를 붙일 필요가 전혀 없다. 또한 집행문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반론보도청구소송의 재판은 재산권 보전을 위한 일반의 가압류, 가처분과는 달리 그 집행은 직접강제가 불가능하고 상대방인 언론사 스스로의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민사소송법제 708 조 제 1 항에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이를 먼저 송달한 때에만 집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규칙 제 4 조 제 5 항 참조).

#### 다. 재판에 대한 불복

반론보도청구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 항고, 상고, 재항고 등 통상의 방법에 따라서 불복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통상의 가압류·가처분소송에 있어서는 그 청구를 인용한 제 1 심 재판이 결정으로 된 때에는 항고에 의하여 곧바로 제 2 심 병원에 불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제 1 심 법원에 이의신청을 통하여 불복하는 것이 허용된다(민소법 제 703 조).

이는 당해 제 1 심 법원이 신속한 보전처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변론을 열지 않고 간단한 소명만에 의하여 재판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정식의 변론을 열어 다시 재판을 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불복절차라고 할 수 없다. 반론보도청구소송 역시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는 이상 그 인용결정에 대하여는 먼저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판결이 있으면 다시 항소를 하여야 하고 막바로 인용결정에 대하여 항고로써 불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 8. 31.자 95 카합 2283 판결 참조).

그런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반론보도청구소송은, 장래에 정식의 본안소송절차에 앞서 긴급히 행하여지는 통상의 보전소송절차로서의 가압류·가처분절차와는 달리 그 성질상 본래부터 본안소송절차이고, 다만 그 신속성을 위해 가처분절차를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가압류·가처분절차와 꼭 같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 또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을 하게 하고 다시 그 재판에 대하여 항소를 하게 하면

한 번 재판을 한 법원이 또 다시 재판을 하게 되어 절차가 지연될 뿐 아니라, 재판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별로 없으므로 신속한 피해 구제를 꾀하려는 당초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그리하여 개정 定刑法과 대법원규칙은 청구를 인용하는 재판은 반드시 판결로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아닌 통상의 항소의 방법에 의해서만 불복을 하도록 하였다(법 제 19 조의 2 제 1 항).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반드시 변론을 여는 이상 기각결정은 있을 수 없게 되었다)에 대하여도 항소로써 불복하여야 하고,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항고로써 불복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 라. 반론보도 후 상소심에서 신청인의 청구를 배척하는 경우의 조치

반론보도청구소송의 재판은 확정되기 전이라도 즉시 집행력이 있으므로 1 심이나 2 심 재판에 따라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후 그 상급심인 2 심이나 3 심에서 심리결과 訴가 부적법하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어 소를 각하하거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는 원심재판을 취소하게 된다. 그런데 반론보도문의 게재 · 방송은 그 이행의 성질상 원심재판이 상소심에서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이루어진 반론보도문을 취소하거나 그것이 없었던 것과 같은 애초의 상태로 되돌릴 방법은 없다. 그리하여 개정 정간법은 언론사측의 손해를 최대한 구제하기 위하여 상소심 법원으로 하여금, 언론사의 신청에 따라 하급심의 재판이 취소된 사실을 보도할 수 있게 하거나 이와 아울러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반론보도와 위 취소사실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게재 사용료로서 적절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 19 조의 2 제 3 항).

이는 통상의 민사소송에 있어 가집행선고가상소심에서 취소, 실효되는 경우 상소심법원이 가집행을 당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게 가지급물의 반환 및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한 것(민소법 제 201 조)과 동일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 3. 재판의 집행

#### 가. 강제이행

신청인의 반론보도청구를 인용한 재판이 있음에도 상대방인 언론사가 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이를 강제로 이행케 할 수 있다. 우리의 민사소송제도상 강제이행에는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의 세 가지 수단이 마련되어 있고, 채무의 내용에 따라 이에 적합한 수단이 활용되는 바, 반론보도문의 게재 방송은 그 성질상 언론사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나 제 3 자가 이를 대신하여 이행할 수는 없으므로 간접강제에 의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

간접 강제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를 이행하도록 명하고 만약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즉시 일정액의 손해배상(70)을 하게 하거나 그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금액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채무자를 압박,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다(민소법 제 693 조). 간접강제명령은 그 채무명의회가 되는 재판이 있는 뒤에 당해 사건의 제 1 심 병원에 별도로 신청함이 원칙이지만, 판례는 일찍부터 당해 소 제기시에 그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미리 이를 신청하는 것도 허용하여 왔는데(서울지법 서부지원 1990. 2. 20.자 89 카 1188 결정), 이에 따라 개정 정간법은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였다(제 19 조 제 1 항 後文). 간접강제 명령시 채무자에게 부여하는 기간은 반론보도를 명하는 재판과 동시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 일(서울민사지법 1982. 12. 10.자 82 타 20095 결정), 5 일(서울민사지법 1989. 2. 28.자 89 타기 1608 결정), 9 일(서울민사지법 1994. 3. 4.자 94 타기 1557 결정), 2 주(서울민사지법 1984. 1. 12.자 83 타 20389 결정), 발령 후 신문, 잡지 등이 최초로 발행되는 날(서울민사지법 1986. 12. 18.자 86 타 24988 결정,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6. 2. 21.자 96 타기 537 결정)과 같이 단기간으로 함이 보통이다.

또 손해배상의 금액은 일간지의 경우 1 일당 50 만원(서울민사지법 1984. 1. 12.자 83 타 20389 결정), 500 만원(서울민사지법 1982. 12. 10.자 82 타 20095 결정), 800 만원(서울지법 서부지원 1996.2. 21.자 96 타기 537 결정 71)), 1,200 만원(서울지법 서부지원 1995. 8. 4.자 95 타기 2543 결정 72)), 월간지의 경우 매월 1,000 만원(서울민사지법 1986. 12. 18.자 86 타 24988 결정), 주간신문의 경우 1 주당 50 만원(서울민사지법 1989. 2. 28.자 89 타기 1608 결정, 1994. 3. 4.자 94 타기 1557 결정)등으로 지연기간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의 배상을 명하는 방식이 지배적이다. 만약 언론사가 위와 같은 간접강제명령을 받고서도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채권자는 간접 강제결정 의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자인 언론사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개시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반론보도청구재판의 강제집행에는 재판의 확정이나 집행문이 필요하지 아니함은 이미 지적하였다.

#### 나. 집행의 정지

재판 등 채무명의를 성립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거나 이미 개시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상소의 제기 (민소법 제 474 조)나 재심 또는 상소추완신청(민소법 제 473 조), 집행에 대한 이의(민소법 제 504 조), 청구에 대한 이의(민소법 제 505 조, 제 507 조 제 2 항), 기타 집행할 판결의 취소 등(민소법 제 501 조 이하)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 강제집행의 정지를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나, 가압류 · 가처분재판의 경우에는 그 신속성의 요구로 인해 원칙적으로 상소제기를 원인으로 한 강제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0. 9.21.자 90 그 33 결정 등 다수).그러나 대법원은 초기의 엄격한 태도를 바꾸어, 보전명령의 내용이 사실상 권리의 종국적인 실현을 초래하고 그 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이를 완화하였는 바(대법원 1995.3.6.자 95 그 2 결정), 이와 같은 예외적 사유로는 건물의 철거나 명도, 반론보도 또는 정정보도 등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반론보도를 명한 재판에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언론사의 신청을 받아 담보를 제공케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5. 8. 1.자 95 카기 609 결정은 언론사에 1,000 만원을 공탁케 하고 항소심판결 선고시 까지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한바 있고, 서울고등법원 1996. 2. 27.자 96 카 135 결정은 민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과 관련하여,이미 제 1 심 법원의 간접강제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담보의 제공없이 그 강제집행의 정지를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된 대법원규칙은 상소 또는 재심의 제기, 상소추완신청이 있는 경우의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 473 조 및 제 474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바(제 5 조 제 1 항), 이는 개정 정간법이 반론보도 후 상소심에서 신청인의 청구가 배척되는 경우에 대한 언론사의 피해구제책으로 손해배상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한 데에 따라 강제집행의 정지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집행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언론보도의 특성상 손해배상만으로는 원상회복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 엄격한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 주

(1) 이로 인해 언론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정정보도 등을 명한 판례를 거의 찾기 어렵다.

(2) 언론중재 위원회의 중재절차는 무료로 제공된다.

(3) 이와 함께 방송법 및 종합유선방송법의 관련 규정도 개정되었다.

(4) 이하 반론권과 반론보도청구권을 동의어로 보아 혼용하기로 한다.

(5) 이는 오늘날 액세스(Access)권으로 논의되고 있다.

(6) 이에 관한 판례로는, 사회적이건 개인적이건 부정확하고 잘못된 정보를 공표하는 것은 미국 연방수정헌법 제 1 조가 보호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미 연방 대법원 *Chaplinsky v. New Hampshire*, 315.U. S. 1942 판결: *Goldwater v. Ginzburg*, 414F, 2d324, 1969 판결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남용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일본 최고재판소 1958. 4. 10. 자 판결이 있다.

(7) 성악인, 언론피해 구제의 실제, 언론중재 1995년 가을호 23면은, 헌법재판소가 반론권의 근거를 지나치게 인격권 및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구하여 그것이 언론자유에 중요한 한 내용을 이루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바, 반론권의 행사 요건으로서 「피해」나 「피해자 성」을 중시하게 되면 결국 피해구제 수단인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 동일한 것이 되어 버릴 것이므로, 반론권 제도를 현실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늘 그것이 언론의 자유의 한 내용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8) 폐지된 언론기본법 제 3 조, 현행 방송법 제 4 조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9) 이하 개정 정간법이라 지칭하기로 한다.

(10) 1995. 12. 30. 정간법의 개정에 따라 정정보도청구사건심판규칙(1988. 3. 4. 대법원 규칙 제 1003 호)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

(11) 그 법적 성질이 용어와는 달리 반론권이라는 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한편 언론기본법은 정기간행물과 방송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었다.

(12) 박용상, 한국에 있어서의 언론중재, 언론중재 1981년 겨울 창간호 19면: 양삼승, 정정보도청구권, 언론중재 1982년 겨울호 11면 이하 참조.

(13) 헌법재판소 1991. 9. 16. 자 89헌마 165 결정, 팽원순, 매스컴 법제이론, 법문사(1988), 182면 참조.

(14) 플로리다, 네바다, 미시시피주는 주법으로 이를 인정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이 1974년 플로리다 주법에 대하여 위헌선언(Miami Herald V. Tornilo, 418. US241 판결)을 한 이후 거의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15) 헌법재판소 1991. 9. 16. 자 89 헌마 165 결정은, "보도내용의 진위를 가리지 아니한 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는 현행 법제 아래에서는 정정보도문이, 만약 이를 그대로 언론보도의 잘못된 보도내용을 바로잡는다는 정정의 성격을 갖고 그와 같은 의미로 게재된다면 이는 보도의 자유와 편집, 편성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반론권의 내용으로서 정정권은 허용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보도내용 외 진실성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으로 정정을 명할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6) 다만, 현행 정간법이나 방송법상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데다, 무엇보다도 민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과 그 실질은 같이 하면서도 실제적·절차적 요건 및 소송절차를 달리 하고 있어서 현실적인 장애가 있다. 자세한 검토는 본고. III. 나. 및 IV. 1.을 참조.

(17) 언론사의 보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보도내용 역시 허위일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진실인 경우에도 불법범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보도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것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민사상이나 형사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 내용이 진실이라도 위법하게 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때에는 정정이 아닌 반론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또 진실이 아닌 경우라도 피해자는 스스로 반론보도만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18)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도 반론권의 행사에는 원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표명하였을 뿐, 그것이 민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과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견해까지 직접적으로 표명한 것은 아니다.

(19) 정간법과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의 관련 규정은 동일하므로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간법을 중심으로 언급하기로 한다.

(20) 다만 1996. 6. 27. 개정 전의 대법원규칙은, 소의 제기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기업 또는 방송국을 경영하는 기업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제 3 조)을 두었다.

(21) 방송법 규정을 유추하여 인정된다는 것이 지배적이었으나 실제로 이를 상대로 한 중재 신청이나 소송은 없었다.

(22) 현재까지 통신을 상대로 한 중재신청은 다수 있었으나 법원의 소송단계에까지 이른 경우는 한 건도 없다. 통신에 대한 중재신청의 경우 당해 통신사와 그 기사를 전재한 타 언론사를 상대로 동시에 반론청구를 하고, 통신사가 반론이나 정정요구에 응할 경우 타 언론사는 이를 그대로 전재하는 것에 동의 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왔다. 타 언론사의 경우 자신에게 당해 보도에 대한 책임이 없음이 자연스레 드러나게 되므로 사건의 해결은 대체로 통신사에 의해 주도되었다.

(23) 언론중재위원회, 프랑스 반론권 해설, 언론중재 1989년 겨울호 및 1990년 봄호 참조.

(24) 이건웅, 언론에 의한 인격권의 침해와 구제, 법원행정처 외국사법연수론집(12집), 338면 이하 참조.

(25) 위 결정은, 사실적 주장이라 하여 반드시 외부적으로 인식 가능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반면, 가치판단이라 함은 윤리적, 종교적, 예술적 척도에 따른 주관적인 판단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26) 이에 관한 이론 중 '결합 및 분리 이론'은, 표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견해를 제시하고 찬성 및 반대를 표명하는 의사표현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근본취지가 있다는 전제하에, 의사표현의 요소가 사실의 주장 및 전달요소와 결합 또는 혼재되어 있고 양자의 분리가 불가능하며 사실에 관한 내용은 평가의 배후에 잠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의 내용을 의사표현으로 인정해야 하며, 어느 쪽이 우세하냐에 따라서 또는 그 주장이나 표현의 핵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통일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건웅, 전계 논문 347면 참조.

(27) 다만 「제 2의 싹쓸이 발언」이라는 표현은 신청인의 발언이 「제 1의 싹쓸이 발언」으로서 양자 간에 발언의 취지가 동일하다는 사실적 주장이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하겠고, 대법원도 이러한 점에 비추어 반론을 허용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28) 방통대를 밥통대로 표현한 경우, 독립기념관 건립 국민성금을 신축기공식 불꽃놀이 화약값으로 낭비하였다고 비판한 경우였다.

(29) 다만 종교관계 간행물 등에 있어 자파의 의견광고에 동조하여 이를 게재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30) 양상승, 정정보도청구권, 언론중재 1982년 겨울호 16면

(31) 동일 신문에 동일 광고가 2회에 걸쳐 게재되고 나서 한차례 기사로도 게재되었다.

(32) 소송에까지 이르지 않는 않았지만 중재신청사례가 종종 눈에 띈다. 이에 관하여는 박용상, 판례를 통해 본 정정보도청구권의 실제, 언론중재 1991년 봄호 27면 이하 참조.

(33) 다만 이 사건에서는 당해 의사만이 소를 제기하였으나 병원에 관한 반론까지 허용하고 있음이 특이하다.

(34) 이와 달리 서울민사지법 1993. 12. 6.자 93카기 3254 판결은, 신청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위 등을 밝힐 목적으로 법원에 작성,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을 언론사가 승낙 없이 요약 보도한 경우에 있어 신청인이 그 진술서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위에서 언론에 발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언론사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35) 원고의 수정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필자인 신청인의 명예 등이 훼손된 바는 없었고, 신청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 역시 자신의 승낙 없이 원고를 수정, 삭제하였고, 그것이 조잡하고 개작의 지적 수준이 천박하여 집필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일본에 대한 국민적 오해를 조성하고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에 역행하는 과오를 범한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그 원고를 집필하였다는 외에 기사의 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어 저작권만이 문제되므로 판시 견해에 전적으로 찬동하나, 수기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 내거나 오해를 일으키게 하는 등의 경우에는 비록 신청인이 그 원고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저작권 외에 명예 등에도 피해를

입었다고 볼 것이므로 신청인이 기사내용의 작성자라 하여 언제나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서울민사지법 1986. 9. 26.자 86 카 28755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 3. 18.자 86 나 4096 판결 참조. 다만, 이 판례의 수기는 신청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언론사가 가공의 민물을 설정, 수기 형식으로 보도한 것이다).

(36) 신청인의 연동을 그대로 묘사한 후 이에 대한 필자의 비판적 견해를 나타내었다.

(37) 단체나 그 구성원 일방에 대한 보도로 인해 당연히 그 상대방이 피해를 입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구성원의 행위가 단체의 행동지침이나 방향, 분위기 등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경우, 또\_는 그 구성원이 단체를 대표하여 단체를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묘사된 경우 등에는 일방의 보도로 인하여 다른 일방도 피해를 입는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단체의 대표자인 노회장이 불륜을 저지르는 등 부도덕한 인물이라는 내용은 단체인 노회에게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다른 목사에 대하여 영입작업을 하였다거나 다른 교단의 교패를 아파트에 붙여 놓는 등으로 신앙이 무절조하다는 내용은 신청인 노회가 영입작업을 하고 있고, 자파 소속 목사도 아닌 사람을 노회장으로 선임하였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인 노회 역시 그 기사로 인해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참고로 서울민사지법 1989. 12. 29.자 89 카 46152 판결은,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성남 지역 간사인 연모씨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전대협 회원 임수경에게 자금 및 입복지침을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기사에 의하여 연모씨는 물론 그 소속 단체인 민청련 역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반론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38) 이 문제는 당해 기사와 학교장 및 법인 이사장 간의 개별적 관련성의 유무를 판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39) 동 판결은 기사내용과 신청인 간에 개별적 관련성이 없어 피해가 없다고 하고 있는 바, 개별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도 피해가 없는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40) 피해자의 반론에 불구하고 언론사가 원래의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확신하는 때에는 뒤에 살펴보게 되는 바와 같이 반론문의 게재와 함께 경위설명 등 적절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론을 다시 만학할 수 있을 것이다.

(41) 비례, 평등, 필요최소한도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

(42) 서울지법 1996. 1. 8.자 95 카기 5440 결정은 같은 취지에서 구성원에 대한 보도로 단체에 피해가 없어 단체의 반론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하고 있다.

(43) 동시에, 그 같은 내용을 보도하더라도 원래의 보도내용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44) 구 언론기본법 제 9 조는 "언론은 공표 전에 모든 공표사항의 진실성, 내용 및 출처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45) 민사소송법 제 261 조는 이러한 사실을 불요증 사실로 규정하여 증거에 의하지 않고서도 법원이 자유롭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6) 어떤 면에서는 법원으로서도 이러한 완충장치를 통하여 언론의 반발을 완화시키려는 암묵적인 고려가 작용하지 않았는가 싶다.

(47) 다만 형사판결이 서증으로 제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원 스스로 지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8) 이상규, 신행정법론(하), 법문사(1985), 100 면 이하 참조

(49) 국유재산법 제 26 조 등에서는 공공단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입법적 정의를 내리거나 그 범위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

(50) 이에 관해서는 평천중신, 범죄보도와 인권, 언론중재 1987년 여름호 59면 이하 참조.

(51) 일본 형법 제 230 조의 2 제 2 항은 기소 전의 범죄사건 보도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미 연방대법원도 Sheppard V. Marwell 사건의 판결(1966년)에서 범죄보도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동진 사건보도와 개인의 권리(미국편), 언론중재 1987년 여름호 49면 이하 참조.

(52) 관행상 현직 법관이 중재부의 장을 맡는다.

(53) 현재 서울특별시 5개부, 각 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단, 충남과 전남, 경북 제외)에 각 1개 부씩 총 15개부가 설치되어 해당 지역의 사건을 관할하고 있다.

(54) 피해자 아닌 언론사는 그가 중재신청인이라도 법원에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음은 물론이다.

(55) 물론 개정 전에도 비공식적으로 중재가 가능하였다.

(56) 반론권에 관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다.

(57) 그 내용이 정정인지 반박인지 애매하다.

(58) 다만 그 반론주장은 직접 화법으로 신청인이 한 경우도 있고 간접화법으로 언론사가 한 경우도 있다.

(59) 다만 이 결정은 그 반론문의 말미에 「정정보도 신청인 아무개」라고 하고 있다.

(60) 보도문 말미의 「정정보도 신청인 아무개」의 표시를 신청인으로부터의 정정 요구 내지는 반론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취지로 볼 수도 있겠다.

(61) 1996. 6. 27.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 의하면 반드시 변론을 열어 심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996. 7. 1. 이후에는 이러한 점이 문제될 여지는 없을 것이다.

(62) 사실상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는 거의 없다. 소송의 실체로서도 불법행위 책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나 정정보도청구는 매우 드물다.

(63)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6. 6. 27. 개정된 대법원 규칙은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의 신청과 민법 제 764 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바(제 2 조 제 4 항), 이 규정의 취지 역시 이와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이다.

(64) 이 때에 또 법원이 고의, 과실의 유무 및 위법성을 가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65) 그럴 경우에는 민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과 정간법상의 반론보도청구권을 통합하여 규율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66) 이 판결은 그러면서도 반론문의 일부 내용을 정정의 형식으로 하고 있다.

(67) 수원지법 1996. 2. 23.자 95 카합 5782 결정은 이와 달리 그 게재 위치를 언론사측에 전적으로 일임하고 있다.

(68) 다만 그 내용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

(69)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사죄광고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던바, 법원은 원 보도가 광고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판단 없이 신청을 기각하였다.

(70) 그러나 그 본질은 일종의 제재이지 손해배상이 아니다.

(71) 반론보도 문을 10 개로 하고, 그 각각에 대하여 게재의 위치별로 1 일당 200 만원에서 1,200 만원까지 다르게 정하고 있다.

(72) 민법 제 764 조에 의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청구사건이다.

□ 성균관 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 31 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지법 남부지원, 서울민사지법 판사

□ 저술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사법적 구제 외

□ 현재 제주지방법원 판사